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 전후인 1948년 4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경상북도 포항·고령·예천지역에서 김○조(金○祚, 2마-1273) 등 민간인 18명이 청년 단원 및 그 가족, 공무원, 우익인사,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48년 4월부터 1950년 9월까지 포항·고령·예천지역에서 진실규명대상자 김○조 등 18명이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었다. 희생자들은 청년단, 공무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2.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18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 사실이 확인된 13명은 다음과 같다. 김○조(金○祚, 2마-1273), 최○택(崔○宅, 2마-13680), 최○율(崔○律, 2마-6357), 최○달(崔○達, 2마-6358), 윤○율(尹○律, 2마-12092), 정○현(鄭○鉉, 2마-14642), 한○이(韓○伊, 2마-14643), 정○문(鄭○汶, 2마-15789), 정○곤(鄭○坤, 2마-5656, -14645), 정○영(鄭○永, 2마-15369), 정○규(鄭○圭, 2마-7148, -14647), 정○수(鄭○守, 2마-7149, 14648), 정○길(鄭○吉, 2마-14649)이다.

상해 사실이 확인된 1명은 임○이(林○伊, 2마-6359)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결정(희생 확인)된 장○봉(張○逢, 2마-12437), 장○달(張○達, 2마-12438), 장○결(張○杰, 2마-12439), 장○대(張○大, 2마-12440) 등 4명은 진실규명결정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의 남성이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이다.

5.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에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2마-1273 등 21건,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신청인】 한○자 등 12명

【결정일】 2025. 1. 14.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 목 차 -

I. 조사 개요	51
1. 사건 개요	51
가. 신청 취지	51
나. 신청 접수 현황	5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53
3. 규명 과제	53
4. 국가기관 등의 기존 조사	54
5. 조사 방법	54
가. 기록 조사	54
나. 진술 조사	57
II. 조사 결과	58
1. 사건 배경	58
가. 한국전쟁 전후 포항 지역의 상황	58
나. 한국전쟁 전후 고령 지역의 상황	59
다. 한국전쟁 전후 예천 지역의 상황	60
2. 사건 경위	61
가. 희생 경위	61
1) 포항시	61
2) 고령군	70
3) 예천군	77
3. 사건 조사 결과	81
가. 희생자의 수와 신원	81
나. 희생자의 특징	84
다.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85
III. 결론과 권고 사항	86
1. 결론	86
2. 권고 사항	86

- 표 목차 -

〈표 1〉 진실규명 신청 상황	51
〈표 2〉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 관련 결정서 주요 내용	54
〈표 3〉 고령군 우곡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개요	71
〈표 4〉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81
〈표 5〉 희생자 거주지별 분포	84
〈표 6〉 희생자 성별 분포	84
〈표 7〉 희생자 연령별 분포	85
〈표 8〉 희생자 직업별 분포	85

- 그림 목차 -

〈그림 1〉 포항시 김○조 관련 내각수반 표창장, 순국청년장	62
〈그림 2〉 포항시 반공순국청년동지 위령비	63
〈그림 3〉 포항시 흥해읍 위령탑	66
〈그림 4〉 정○현 가족 가계도	71
〈그림 5〉 정○문의 전사확인서 및 배우자 정○○의 청원서	73

- 붙임 목차 -

〈붙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88
〈붙임(표) 2〉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93
〈붙임(표)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96

I. 조사 개요

1. 사건 개요

가. 신청 취지

경북 포항·고령·예천지역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 우익인사, 청년단원,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국가의 보상 등 피해구제를 요구하였다.

나. 신청 접수 현황

신청인 한○자 등 12명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대상자 김○조 등 18명이 경북 포항·고령·예천 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총 12명, 신청 건수는 총 21건,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18명¹⁾이다.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²⁾의 진실규명 신청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실규명 신청 상황

연번	사건 번호 (2마-)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발생 장소	
포항 (6건, 6명)												
1	1273	2021. 1. 28.	한○자 (韓○子)	김○조 (金○祚)	남	시아버지	1908	1948. 4. 18.	1948. 4. 18.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	

1) 신청인 12명 중 신청인 최○복이 3개의 사건(2마-6357, 2마-6358, 2마-6359)을, 정○상이 6개의 사건(2마-14642, 2마-14643, 2마-14645, 2마-14647, 2마-14648, 2마-14649)을, 정○이 3개의 사건(2마-5656, 2마-7148, 2마-7149)을 신청하였다. 또한 진실규명대상자 총 18명 중 정○곤에 대하여 2개의 사건(2마-5656, 2마-14645)이, 정○규에 대하여 2개의 사건(2마-7148, 2마-16147)이, 정○수에 대하여 2개의 사건(2마-7149, 2마-14648)이 진실규명 신청되었다. 이 중에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희생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경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총 140건이며, 조사개시 된 사건은 총 125건이다. 이 중 34건은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에서, 13건은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에서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8건 중 23건을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하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이 사건’이라고 한다.

연번	사건 번호 (2마-)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발생 장소	
2	13680	2022. 7. 5.	최○일 (崔○日)	최○택 (崔○宅)	남	아버지	1907	1950.77. (음)	1950.8.21.	영일군 흥해면 망천동	영일군 흥해면 곡강동	
3	6357	2021. 7. 7.	최○복 (崔○福)	최○율 (崔○律)	남	형	1940	1950.12.17. (음)	1950.2.4.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4	6358	2021. 7. 7.	최○복 (崔○福)	최○달 (崔○達)	남	형	1943	1950.12.17. (음)	1950.2.4.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5	6359	2021. 7. 7.	최○복 (崔○福)	임○이 (林○伊)	여	어머니	1907	-	1995.4.21.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6	12092	2022. 3. 15.	윤○수 (尹○守)	윤○율 (尹○律)	남	아버지	1926	1950.8.13. (음)	1950.9.16.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고령 (11건, 8명)												
7	14642	2022. 9. 2.	정○상 (鄭○相)	정○현 (鄭○鉉)	남	할아버지	1878	1950.8.21.	1950.8.21.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8	14643	2022. 9. 2.	정○상 (鄭○相)	한○이 (韓○伊)	여	할머니	1891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9	15789	2022. 11. 2.	정○규 (鄭○奎)	정○문 (鄭○汶)	남	할아버지	1914	1949.3.15.	1949.3.15.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10	5656	2021. 6. 28.	정○ (鄭○)	정○곤 (鄭○坤)	남	아버지	1918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14645와 동일대상자
11	14645	2022. 9. 2.	정○상 (鄭○相)	정○곤 (鄭○坤)	남	삼촌	1918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5656과 동일대상자
12	15369	2022. 10. 12.	정○상 (鄭○相)	정○영 (鄭○永)	남	아버지	1924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13	7148	2021. 8. 2.	정○ (鄭○)	정○규 (鄭○圭)	남	삼촌	1927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14647과 동일대상자
14	14647	2022. 9. 2.	정○상 (鄭○相)	정○규 (鄭○圭)	남	아버지	1927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7148과 동일대상자
15	7149	2021. 8. 2.	정○ (鄭○)	정○수 (鄭○守)	남	삼촌	1934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14648과 동일대상자
16	14648	2022. 9. 2.	정○상 (鄭○相)	정○수 (鄭○守)	남	삼촌	1934	1950.8.7.	1950.8.7.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마- 7149와 동일대상자
17	14649	2022. 9. 2.	정○상 (鄭○相)	정○길 (鄭○吉)	남	삼촌	1942	1950.8.21.	1950.8.21.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연번	사건 번호 (2마-)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발생 장소	
예천 (4건, 4명)												
18	12437	2022. 4. 11.	장○현 (張○鉉)	장○봉 (張○逢)	남	아버지	1912	1950.7.18.	1950.7.20.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19	12438	2022. 4. 11.	이○옥 (李○玉)	장○달 (張○達)	남	시아버지	1918	1950.7.18.	1954.12.17.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20	12439	2022. 4. 11.	조○순 (趙○順)	장○걸 (張○杰)	남	시아버지	1918	1950.7.18.	1950.7.17.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21	12440	2022. 4. 11.	장○배 (張○煥)	장○대 (張○大)	남	아버지	1921	1950.7.18.	1950.9.20.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신청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5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 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차(2021. 8. 12.), 제22차(2022. 1. 18.), 제39차(2022. 8. 30.), 제46차(2022. 12. 6.) 제1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제15차(2021. 8. 26.), 제25차(2022. 1. 25.), 제40차(2022. 9. 6.), 제49차(2022. 12. 27.) 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규명 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재 여부, 발생 배경,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경위,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희생자의 수, 가해 주체, 가해의 위법성 여부, 유족의 피해 등을 밝히고자 한다.

4. 국가기관 등의 기존 조사

○ 1기 진실화해위원회³⁾의 진실규명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경북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2009. 10. 20.)이다. 이 사건 관련 주요 결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 관련 결정서 주요 내용

결정서	결정일	주요 내용	비고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 10. 20.	1947년 12월~1953년 3월 경상북도 안동, 예천, 봉화, 영주, 문경, 영덕, 청송, 영일, 경주, 청도, 영천, 경산, 대구, 칠곡, 군위, 구미, 의성, 김천, 고령, 상주, 울진 등 21개 지역에서 진실규명대상자 98명과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43명 등 총 141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 상해를 당하거나 행방 불명 혹은 강제 연행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여 진실을 규명하였다. ⁴⁾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은 73명의 신청인이 사건을 신청했으며, 분류, 병합한 58개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는 총 100명이다.	

5. 조사 방법

가. 기록 조사

1)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생산한 한국전쟁 전후 경북 지역 관련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건 기록을 검토·활용하였다. 검토·활용한 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건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경북 지역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와 사건 기록

-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1.

3)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하여, 2010년 12월 31일 최종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으로 같은 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와 구분하여, 이하 '1기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한다.

4)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22.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권, 2022.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23.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성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2024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권, 2024.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4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24.
-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 『2024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3권, 2024.

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 조사 연구용역 사업(2007)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피해 규모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책임기관을 선정해 각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다.⁵⁾ 이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이 경북 예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피해자 현황 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경상북도 예천군)』(이하 『피해자현황조사』)가 작성되었다.

『피해자 현황 조사』에는 경북 예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면·리별 사건 유형, 발생 시기, 사건 장소, 가해자, 사건 배경, 사건 개요, 참고자료, 피조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가족의 증언을 우선으로 듣고, 유교적 관습에 따라 피해자의 제사를 모시는 아들의 증언에 무게를 두고 청취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형제, 당시 목격자를 통해 보충하였다. 그 밖에 토박이이면서 오랫동안 마을일을 보았던 전·현직 이장을 탐문하여 구술 채록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1권, 2010, 116~126쪽.

2) 희생자 명부

진실화해위원회는 『6·25사변 피살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는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작성한 명부이다. 공보처 통계국은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원 피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 상황을 개인별로 작성해 종합하였다. 이 명부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 장소, 본적, 주소가 정리되어 있다. 이 명부에 기재된 한국전쟁 전후시기 경북 지역에서 희생된 887명의 명단 중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13명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는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과 1954년 2차에 걸쳐 작성한 명부이다. 이 명부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끌려간 피납치자와 의용군, 노무자로 강제 징집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피납치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납연월일, 피납 장소, 주소가 정리되어 있다. 이 명부에 기재된 경북 지역 피납치자 명단 중에서,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1명이 등재되어 있다.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는 청우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 집행위원회가 1963년 10년 11일 합동위령제를 집행하기 위해 만든 명부로 1964년 1월에 완성되었다. 이 명부에는 순국반공청년운동자의 성명, 출생연도, 본적, 주소, 직위 및 소속, 당시 소속 단체 및 직위, 학력 및 경력, 순국투쟁 개황, 유족과의 관계와 이름이 정리되어 있다. 이 명부를 바탕으로 당시 내각수반은 명부에 기재된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 명부에 기재된 경북 지역 희생자 명단 중에서,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2명이 등재되어 있다.

3) 기타 자료

그 밖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아래 자료를 참고하였다.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Ⅱ』, 1973.
- 보병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1980.
- 한국반공연맹,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87, 2010
-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1: 예천의 역사』, 예천군, 2005.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 포항경찰서, 『경찰연혁사』, 발행연도 미상.

- 포항경찰서, 『관내상황철』, 1954.
- 고령경찰서, 『전사확인서』, 1967.
- 포항경찰서, 『애국청년단체』(순상애국단체원 명부, 상이경찰관대장, 순직경찰관대장), 1953.
- 『부산일보』, 『매일신문』, 『조선일보』, 『남조선민보』 신문기사 등

나. 진술 조사

1) 신청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한○자(2마-1273) 등 12명에 대한 신청인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의 주요 진술 내용은 <붙임(표) 1>과 같다.

2) 참고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참고인 양○○ 등 6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고인 진술 내용은 <붙임(표) 2>와 같다. 이때 신청인이 본인이 신청한 사건을 진술하면서 다른 사건의 희생경위를 진술하였을 때 해당 진술을 참고인 진술로 인용한 경우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서’라고 정리하였다.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 기록을 통해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경위 등을 확인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진술 내용은 <붙임(표) 3>과 같다.

II. 조사 결과

1. 사건 배경

가. 한국전쟁 전후 포항⁶⁾ 지역의 상황

포항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무렵까지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특히 구암산, 비학산, 보현산 등이 있어 지형적으로 김달삼 부대를 비롯한 빨치산 부대의 세력이 상당히 강했다.

1946년, 대구10월 사건의 영향이 포항에도 미쳤다. 당시에는 포항의 각 지역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10월 3일에 청년 700명이 시가지를 행진했으며, 이날 밤 포항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이후 기계면·구룡포읍 등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이는 와중 영일군 군수를 비롯해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⁷⁾

대구10월사건, 2·7총파업⁸⁾, 대구 6연대 사건⁹⁾ 이후 일부 주민들이 태백산 일대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했다. 특히 대구 6연대 사건 중 3차 사건은 포항 오천에서 일어났는데, 이들 중 좌익세력 일부가 인근의 보현산, 동대산 등으로 들어가 빨치산에 합류하기도 하였다.¹⁰⁾ 1949년 8월 4일, 김달삼 부대(제3병단)가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해안으로 상륙하여 이 일대의 좌익들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부터 군경 토벌부대와 빨치산 부대의 전투가 지속되었으며 1949년 9월과 11월의 태백산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으로 대부분의 빨치산 활동은 소멸하게 되었다.¹¹⁾

당시 포항에서 있었던 군경 토벌부대와 빨치산 부대의 전투상황은 포항경찰서의 『경찰연혁사』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은 1948년 6월 6일 송라면 광천리에서 빨치산 1명 사살, 1949년 8월 7일 지행면 죽정리 태봉산 아지트를 습격하여 빨치산 1명을 사살, 1949년 11월 2일 죽장면 상옥리에서 빨치산과 교전, 1949년 9월 6일 신광면 죽성리에서 빨치산 16명과 교전하여 4명을 사살했다고 한다.¹²⁾

이처럼 해방 이후 포항지역에서는 좌익계열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좌익활동은

6) 포항은 1914년 연일군, 흥해군, 장기군, 청하군 4군을 통합하는 영일군이란 이름으로 통폐합되었다. 그 후 포항읍은 1949년 포항부로 승격되어 영일군에서 분리되어 같은 해 8월에 포항시로 개칭되었다. 1993년 포항시와 영일군을 묶어 현재의 포항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시기에는 해당 지역들이 경북 영일에 속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지명에 따라 경북 포항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권』, 2010. 165~172쪽, 498~503쪽.

7)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60쪽.

8) 2·7투쟁은 1948년 2월 7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막기 위해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세력들이 총파업과 봉기를 한 사건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306>, 2024. 2. 8. 접속)

9) 대구 6연대 사건은 여순사건에 이어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제6연대 병사 400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백골사단역사』, 1980, 109~110쪽.

10) 1기 진실화해위원회,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10, 701쪽.

11)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77~78쪽.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 694쪽.

무장투쟁, 공비, 빨치산 투쟁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¹³⁾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초에 해안 쪽으로는 영덕까지 인민군이 내려와 전투를 벌였고 내륙 쪽으로도 기계면·죽장면의 산악지대로 인민군 정규군과 유격대가 침투하여 포항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8월에 들어서면서 인민군의 공세는 더욱 거세져서 8월 9일에는 기계면이 점령되었고 이틀 뒤인 8월 11일에는 포항시가 점령되어 포항경찰서를 비롯한 아군이 모두 구룡포읍과 동해면 쪽으로 후퇴했다. 8월 17일에는 영덕군 남정면과 영일군 청하면 월포동 일대에 고립되어 있던 국군 제3사단이 구룡포읍으로 해상 철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포항지역은 구룡포읍·동해면·오천면·장기면 등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두 달여 간 인민군에 점령되었다.

1950년 9월 말, 포항시 탈환(1950년 9월 20일), 기계면·흥해면 탈환(9월 22일), 청하면 탈환(9월 23일)에 성공하면서 포항 지역의 전황은 안정권에 들어섰다.¹⁴⁾

나. 한국전쟁 발발 전후 고령 지역의 상황

해방 후 고령 지역은 생활고 및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대구 10월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고령군민들은 조선식량영단 고령출장소 앞에서 창고미 방출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고령경찰서 정문 등을 돌며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⁵⁾

이후 제주 4·3사건, 여순 사건 등을 거치며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고령지역 거주민들도 대구 10월 사건에 가담하거나 좌익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등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찰의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근의 대구형무소와 김천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한편,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 따르면 1949년 10월 31일, 가야산과 인접한 덕곡면 등에서는 가야산을 거점으로 하는 좌익에 의해 덕곡지서가 습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⁶⁾ 따라서 고령 또한 경북의 다른 지역처럼 좌우익의 대립이 있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경찰은 발표문을 통해 군민들이 현 거주지를 지키고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재산의 반출을 금지시켰으나 군청, 경찰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대부분 피난한 상황이었다. 1950년 8월 2일에는 인민군 제4사단이 고령에 진입하였고 8월 3일 새벽에는 미 공병대에 의해

13) 좌익계열의 조직에 참여했거나 빨치산 등에게 식량 등을 제공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경찰서의 「관내상황철」에는 대구 10월사건, 대구 6연대 사건(3차) 등 해방 이후 포항지역의 '좌익활동'을 열거한 후 "이에 포항경찰서에서는 보도연맹을 조직하여 포섭, 선도하여 정화에 힘쓰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포항경찰서, 「관내상황철」, 1954.

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10, 720쪽.

15)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342~345쪽.

16) 1987년 출간된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는 '한국반공연맹'이 혼란기 경북 내 시군별 전쟁 체험 기록을 수집하여 발간한 책이다. 한국반공연맹,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낙동강 철교가 폭파되었다. 고령군은 이때¹⁷⁾부터 9월 말까지 인민군의 점령상태에 있게 되었으며 고령면에 소재한 관청건물과 가옥 700여 채는 폭격으로 인해 초토화되었다.¹⁸⁾ 또한 1951년 8월 18일에는 빨치산이 고령향교에 진을 치고 고령 농협을 임시 청사로 활용하고 있던 고령경찰서 병력과 한 시간 이상 치열한 교전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빨치산은 대한청년단 고령군 단장 등 요인들에 대한 납치, 암살 시도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 우체국장과 순경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¹⁹⁾

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예천 지역의 상황

해방 후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대구10월사건의 여파는 예천을 비롯한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0월 4일 낮 2시경 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이 주도하는 군중이 민청사무실을 출발하여 예천경찰서로 향하면서 우익청년단체인 광복청년대원들 및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고 10월 5일 유혈 사태로 변했다.

군경이 대구10월 사건을 진압하고 좌익을 탄압함으로써 점차 좌익세력은 약화되었고 광복청년대를 비롯한 우익세력의 힘이 강화되었다. 대구10월 사건 후 광복청년대는 대동청년단에 흡수되었으며, 대동청년단 예천군지부가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무렵 또다른 우익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가 결성되었다.²⁰⁾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의 남하로 단양과 문경지역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예천은 전투지역으로 변했다. 1950년 7월 12일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의 일부 병력(제7중대)이 예천읍에 도착하자 제21연대 9중대를 규합하고 7월 13일 8사단 2개 중대병력과 경찰병력이 합세하였다. 이 무렵 예천경찰서는 국군과 함께 예천방어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예천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을 진행하였다.

예천읍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국군은 사단 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풍기·영주지구에서 산발적으로 침입해 오는 인민군 수색대와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예천에 주둔하던 국군이 영주로 이동하면서 인민군은 예천을 손쉽게 장악하게 되었다.²¹⁾

1950년 7월 19일 인민군 제8사단은 2개의 중대 병력으로 예천읍을 공격하자 예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미군(제25사단 제24연대 제3대대)과 경찰은 안동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이들은 국군 제18연대와 합동으로 7월 20일 예천읍을 공격하여 인민군을 일시적으로 몰아내었으나 7월 24일

17) 다만 국립경찰의 총사령부인 비상경비총사령부는 신상목 총경 휘하 경찰부대에게 8월 6일 대구 월배지사로 지휘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고령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2』, 1973, 273~275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 65쪽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0쪽.

18)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347~348쪽.

19)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342~348쪽.

20)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는 북한에서 월남해 온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청년단체이다. 1948년 대동청년단 예천군지부와 함께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예천군 지부로 통합되었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0쪽.

21)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3쪽.

대규모 병력을 앞세운 인민군에 밀려 내성천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7월 31일 안동에서 열린 국군 고급 지휘관 회의에서 방어선 구축이 아닌 상부 명령에 따른 철수 준비를 하면서 인민군은 국군 진지를 공격했다. 국군은 인민군의 후방이 된 예천의 한천교, 고평교 등과 인민군 주둔지를 공격했으나 예천·안동 등지를 인민군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9월 21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는 등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며 6사단을 필두로 서서히 탈환하며, 국군 제8사단은 9월 26일 예천·안동을 탈환했다. 그러나 약 2개월 동안 예천에서 전투 중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인적 피해 외에도 예천의 가옥과 교육기관 등이 파괴되는 등 물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²²⁾

2. 사건 경위

가. 희생 경위

1) 포항시(구 영일군)

가) 진실규명대상자 김○조(2마-1273, 신청인 한○자)

진실규명대상자 김○조(金○祚, 1908년생, 청년단장²³⁾)는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에 거주하던 중 1948년 5월 1일 곡강면 칠포동 개천 인근에서 우익인사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

신청인 한○자(1948년생, 며느리)의 전문²⁴⁾ 진술에 따르면, 해방 후 김○조는 반공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48년 5월 1일(음력 3월 23일)경 김○조는 칠포 초소에서 순경들과 반공 활동 및 국회의원 선거 대비 업무를 논의하고 귀가를 하고 있었다.²⁵⁾ 김○조가 개천 인근을 지나던 무렵, 수십 명의 좌익 세력이 나타나 김○조를 칼로 찔렀다. 칼에 찔린 김○조는 피를 흘리면서 개천 인근에 살던 지인의 집으로 갔으나 사망하였다. 김○조의 지인은 김○조의 배우자 정○○에게 소식을 전했고, 정○○은 김○조가 사망한 곳으로 가서 김○조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김○조의 제사는 음력 3월 22일(양력 1948년 4월 30일)에 지내고 있다.²⁶⁾

22)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3~274쪽.

23) 신청인 한○자는 “시아버지의 맥이 큰 부자여서 특별한 직업은 없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는 김○조에 대하여 “칠포동 청년단장이자 당시 칠포동 선거관리 위원으로 인선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한○자 진술조서(2022. 12. 15.); 「5·10선거 관리위원장 파살사건」: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24) 신청인 한○자는 진실규명대상자 김○조의 희생 등의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한○자 진술조서(2022. 12. 15.).

25) 신청인은 제삿날 외 사건 발생 연도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1948년으로 판단하였다.

26) 신청인 한○자 진술조서(2022. 12. 15.).

제적등본에는 김○조가 ‘1948년 4월 18일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 384번지(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²⁷⁾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1987)에는 “1948년 4월 11일(음 3월 4일)²⁸⁾ 밤 칠포동 청년 단장이며 칠포동 선거관리 위원으로 인선된 김○조(金○祚) 단장이 자정을 기하여 공비들의 기습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겸 청년 단장이었던 김○조씨를 살해한 것은 곧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증언: 포항 온고회 회원 일동)라고 기재되어 있다.²⁹⁾

1963년 내각에서 수여한 「표창장」에는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며 이에 표창장을 추서하여 길이 표창함”이라고 되어 있다.³⁰⁾

〈그림 1〉 내각수반 표창장 및 순국청년장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162번)에는 김○조가 “열렬한 우익인사로 5·10 총선을 위하여 의창면 조도리에서 선거장 설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납치를 당하여 피살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³¹⁾

성명	제적등본 (한자명/본적/사망일)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한자명/본적/순국년월일)
김○조	金○祚/영일군 곡강면 칠포동 384/1948. 4. 18.	金○祚/의창면 칠포동 394/의창면 칠포동 앞 하천/1946. 4. 9.

27) ‘호주 김○○ 계출 1948년 7월 22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은 김○조의 아버지이다.

28) 1948년 4월 11일은 실제로 음력 3월 3일이므로 ‘음 3월 4일’은 오키로 보인다.

29) 「5·10선거 관리위원장 피살사건」: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30) 「표창장」(내각수반 김현철, 제7325호, 1963. 10. 2.).

31)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출생월일(9월 17일) 및 본적지번(394번지)이 실제 출생월일(9월 23일) 및 실제 본적지(384번지)와 상이하였으나 그 외 생년, 주소의 면과 리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희생 연도가 1946년으로 기재되었으나, 5·10 총선거를 준비했다는 내용에 따라 이는 1948년의 오키로 판단하였다. 곡강면은 1956년 흥해면과 통합되어 의창면이 되었다.

포항시 「반공순국청년동지위령비」에는 김○조의 성명이 각인되어 있다.³²⁾

〈그림 2〉 포항시 「반공순국청년동지 위령비」(1963년 11월 10일 건립)



제적등본 및 자료들에 기재된 사건 발생시기는 모두 1948년 4월 전후였지만 일자가 상이하였다. 김○조의 제삿날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조의 희생 시기는 1948년 5월 1일로 판단된다.

1946년 곡강초등학교에 3학년으로 전학을 와서 1949년 졸업한 김○조의 아들 김○○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³³⁾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한○자가 김○조의 희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3)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서 김○조 희생 경위가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4)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 명부』에 김○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 발생 경위가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5) 「반공순국청년동지위령비」와 내각수반 명의의 표창장에서 진실규명대상자의 성명이 확인되는 점, (6) 진실규명대상자의 시신이 가족에 의해 수습된 점, (7) 김○조의 제사를 음력 3월 22일(양력 1948년 5월 1일)에 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조(2마-1273)는 1948년 5월 1일 곡강면 철포동 개천 인근에서 우익인사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에게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진실규명대상자 최○택(2마-13680, 신청인 최○일)

진실규명대상자 최○택(崔○宅, 1907년생, 의사)은 영일군 흥해면 망천동에 거주하던 중 1950년 8월 21일 영일군 흥해면 곡강동 인근에서 우익 청년단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

32) 1963년 11월 10일 포항시 북구 덕수동 수도산에 건립된 비석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8월 23일에 비석을 확인하였다. 비석에는 “포항지역 반공순국청년동지” 희생자 130명의 성명이 각인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진실규명대상자 김○조를 확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포항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출장 결과보고」(조사3과-3777, 2024. 9. 10.).

33) 곡강초등학교, 「학적기록 확인 및 자료 제출(김○만, 2마-1273)」(곡강초등학교-11076, 2024. 11. 27.).

신청인 최○일(1948년생, 아들)의 전문³⁴⁾ 진술에 따르면, 최○택은 일본 오사카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해방 무렵 귀국하여 흥해면 망천동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병원 2층에 우익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을 두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최○택은 임시 군의관으로 위촉되어 안강 전투³⁵⁾에서 부상을 입은 국군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으나 1950년 8월 20일경 전선이 후퇴하자 더 이상 군인과 함께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최○택은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기 위해 곡강동 봉림마을 인근 해변으로 갔다.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가 운항하지 않았고, 최○택과 가족들은 해변 인근에 머무르며 배가 뜰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무렵, 누군가 인민군에게 최○택이 국군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밀고하였다. 인민군 한 사람이 석 씨라는 마을 주민과 함께 최○택을 찾아왔다. 인민군은 “선생님, 잠깐만요.”하며 최○택을 불러낸 후 봉림마을 해변과 인접한 산으로 최○택을 연행하였다. 그곳에는 흥해면 일대에서 끌려온 사람 여러 명이 집결해 있었다. 인민군은 최○택에게 인민군 부상자를 치료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최○택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를 이유로 최○택은 인민군에게 붙잡혀 있던 11명과 함께 희생되었다. 며칠 후, 인민군으로부터 살아 나온 사람이 최○택의 가족들에게 최○택의 희생 사실을 알려주었다. 최○택의 가족들은 현장에 가서 최○택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³⁶⁾ 그후 가족들은 음력 7월 7일(1950년 양력 8월 20일)에 최○택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³⁷⁾

참고인 양○○(1941년생, 이웃)의 전문³⁸⁾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흥해지서에는 대한청년단원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흥해면 인민군 점령 후, 인민군들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청년단원을 찾아 연행하였다. 인민군은 연행한 최○택과 청년단원들을 흥해면 곡강동 하천변에서 총살하였다.³⁹⁾ 흥해읍사무소에 최○택을 비롯하여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⁴⁰⁾

1955년 대구초등학교에 입학한 최○택의 아들 최○일의 「생활기록부」에는 편모슬하에서 자라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⁴¹⁾

제적등본에는 최○택이 1950년 8월 21일 영일군 흥해면 곡강동 산곡(山谷)에서 전란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⁴²⁾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1987)에는 “1950년 8월 11일 (중략) 공산주의자들도 같은 동포들인데

34) 신청인 최○일은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희생 등의 사건 내용을 어머니 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최○일 진술조서(2023. 7. 19.).

35) 1950년 8월 10일 인민군은 포항군 기계면을 점령하고 경주로 남하하려 하였으나, 국군은 8월 18일 다시 기계면을 탈환했다. ‘안강 전투’는 그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일어난 기계·안강 전투를 의미한다. 온창일 외, 『한국전쟁사 부도』, 84~87쪽, 도서출판 황금알.

36) “당시 여름이라 시신의 훼손이 심해서, 아버지의 옷을 보고 시신을 분간했다.” 신청인 최○일 진술조서(2023. 7. 19.).

37) 신청인 최○일 진술조서(2023. 7. 19.).

38) 참고인 양○○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다녀온 후에,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희생 사실 등의 사건 내용을 최○택의 조카 최○○(참고인 양○○의 동창생)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양○○ 진술조서(2024. 8. 22.).

39) 참고인 양○○는 최○택의 희생 장소가 현재 곡강천 정수장이 위치한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이곳의 지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126번지(흥해맑은물재생센터)이다.

40) 참고인 양○○ 진술조서(2024. 8. 22.).

41) 대구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 결과 제출」(대구초등학교-12039, 2024. 11. 27.).

42) ‘동거자 오○○ 계출 1951년 2월 22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오○○은 최○택의 배우자이다.

하는 단일한 생각으로 고향주변에서 머물고 있던 고 최○택 단원을 비롯한 12명의 단원이 적도들에게 잡혀 무참히 생명을 잃는 비극이 그날 이후부터 며칠간에 걸쳐서 자행 되었던 것이다.”(증언: 포항 온고회 회원 일동)라고 기재되어 있다.⁴³⁾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821번)에는 최○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⁴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⁴⁵⁾

성 명	제적등본 (한자명/본적/사망일)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한자명/본적/순국년월일)
최○택	崔○宅/흥해면 망천동 939/1950. 8. 21.	崔○澤/의창면 망천 939/1950. 8. 17.

『6·25사변피납치자 명부』에는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성명이 확인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연번	성 명	제적등본 (한자명/본적/사망일)	납북인사 DB (한자명/나이/직업/주소/납치장소/납치일)	비고
1	최○택	崔○宅/흥해면 망천동 939/1950. 8. 21.	崔○澤/43/의사/곡강면 흥안리/곡강면 흥안리/1950. 8. 20.	1952년 명부
2	최○택	崔○宅/흥해면 망천동 939/1950. 8. 21.	崔○澤/48/의사/영일군 흥해면 망천동 939/영일군 봉림동/1950. 8. 15.	1954년 명부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⁴⁶⁾

성명	제적등본 (한자명/본적/사망일)	6·25사변 피살자 명부 (한자명/직업/본적/피살장소/피살년월일)
최○택	崔○宅/흥해면 망천동 939/1950. 8. 21.	崔○澤/의사/포항시 덕산동/경북 포항시 흥해읍 성내리/1950. 8. 9.

흥해읍 「위령탑」에는 최○택을 비롯한 총 12명의 희생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⁴⁷⁾

43) 「6·25와 흥해 청년단원들」: 『내 고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44)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는 희생일, 본적 외 다른 정보는 공란이었다.

45)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기재된 최○택의 한자(宅)가 실제 한자(澤)와 상이하나 그 외 본적 주소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흥해면은 1956년 곡강면과 통합되어 의창면이 되었다.

46) 월간조선사에서 발간한 『피살자 5만9994명』에는 최○택의 주소가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 원문에는 425쪽 “남○○”부터 431쪽 “김○○”까지의 주소가 모두 중복 부호(〃)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 외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기재된 최○택의 본적(포항시 덕산동)이 실제 본적(흥해면 망천동)과 상이하고 최○택의 한자(宅)가 실제 이름의 한자(澤)와 상이하나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기재된 한자가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기재된 한자와 동일한 점, 최○택의 직업이 진술과 일치하고 흥해읍 「위령탑」에 최○택과 함께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정○○, 권○○, 박○○, 추○○, 노○○와 피살연월일이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 1952; 월간조선사, 『피살자 5만9994명』, 2003.

47) 대한청년흥해면단부가 1951년 5월 5일에 건립하였다. 이 비석은 현재 흥해읍사무소 경내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8월 22일에 비석을 확인하였으며,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성명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비석에는 추○○, 노○○, 정○○, 최○○, 오○○, 권○○, 박○○, 정○○, 박○○, 정○○, 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포항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출장 결과보고」(조사3과-3777, 2024. 9. 10.).

〈그림 3〉 포항시 흥해읍 「위령탑」(1951년 5월 5일 건립)



신청인의 진술, 제적등본, 제삿날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최○택의 희생 시기는 1950년 8월 21일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최○일이 최○택 희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양○○가 최○택의 희생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3)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4)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6·25사변 피살자 명부』상의 명단과 진실규명대상자가 일치하고 사건 발생 경위가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5)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서 최○택의 희생 경위가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6) 흥해읍 「위령탑」에 진실규명대상자의 성명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7) 흥해면 곡강동 하천변에서 최○택의 시신이 수습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최○택(2마13680)은 1950년 8월 21일 영일군 흥해면 곡강동 인근에서 우익 청년단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진실규명대상자 최○율·최○달·임○이(2마-6357·6358·6359, 신청인 최○복)

진실규명대상자 최○율(崔○律, 1940년생, 학생)과 최○달(崔○達, 1943년생, 학생)은 형제, 임○이(林○伊, 1907년생, 주부)는 두 사람의 어머니로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에 거주하였다. 최○율과 최○달은 1950년 2월 4일 자택에서 마을을 습격한 무장공비에게 희생되었으며, 임○이는 같은 날 무장공비에게 죽창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

신청인 최○복(1948년생, 최○율·최○달의 동생, 임○이의 아들)의 전문⁴⁸⁾ 진술에 따르면, 1950년 2월 4일(음력 1949년 12월 17일) 밤 4~50여 명의 좌익들이 지경리를 습격하였다. 좌익들은 마을 전체를 몰살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창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당시 임○이의 배우자 최○○은 시집을 간 큰 딸의 집에 가 있었고, 임○이의 집에는 다섯 남매와 임○이만 남아 있었다. 좌익들이 임○이의 집에 들어와 임○이를 찌르려 하자 임○이의 아들 최○율과 최○달이 이를 막다

48) 신청인 최○복은 진실규명대상자 최○율·최○달의 희생 사실과 진실규명대상자 임○이의 상해 사실 등의 사건 내용을 어머니 임○이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최○복 진술조서(2023. 2. 7.).

가 즉사하였다. 그후 좌익들은 임○이를 죽창으로 수 차례 찔렀고 임○이는 창자가 튀어나오는 증상을 입었다. 임○이의 배우자 최○○은 마을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임○이를 발견하고 포항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임○이는 3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40여 년간 거동이 불편하였으며 항상 약을 먹어야 했다. 최○울과 최○달의 시신은 마을 뒷산에 매장하였다. 최○울과 최○달은 어릴 때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같은 날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3~40가구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있다.⁴⁹⁾

참고인 최○○(1944년생, 최○울·최○달의 동생, 임○이의 아들)의 목격 및 전문⁵⁰⁾ 진술에 따르면, 1950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경 임○이의 집에는 임○이와 임○이의 자녀들인 최○○⁵¹⁾, 최○울, 최○달, 참고인 최○○, 신청인 최○복 남매가 함께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뒷산에 있던 좌익들이 나팔을 불고는 마을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⁵²⁾ 임○이는 나이가 어린 최○○과 최○복을 방구석에 있는 이불 사이에 숨겼고, 좌익들은 임○이의 집에 들이닥쳤다. 좌익들은 최○○, 최○울, 최○달을 죽창으로 살해하고는 살려달라고 사정하던 임○이를 죽창으로 수차례 찔렀다. 참고인 최○○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그후 좌익들은 나팔을 불고는 일제히 산으로 올라갔으며, 살아남은 임○이는 창자가 튀어나오는 상해를 입어 포항도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두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임○이는 거동이 불편한 채로 평생을 살아야 했다.⁵³⁾

참고인 김○○(1947년생, 최○울·최○달의 매제, 임○이의 사위)의 목격 및 전문⁵⁴⁾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전 좌익들은 송라면 지경리 마을의 배를 탈취한 뒤 무기를 실어와 마을 앞 바다에 숨겨두었다. 좌익들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였으나 송라면 지경리 청년단이 이를 목격하고는 남정지서에 신고하였다. 1950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 좌익들은 무기운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경리를 습격했다. 그날은 지경리 동회 날로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많이 모여 있었고, 마을회관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⁵⁵⁾

49) 신청인 최○복 진술조서(2023. 2. 7.); 신청인 최○복 통화보고서(2024. 11. 25.).

50) 참고인 최○○은 진실규명대상자 최○울·최○달의 희생과 시신수습, 진실규명대상자 임○이의 상해 등을 목격였으며, 그후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4. 8. 22.).

51) 호적과 참고인 최○○의 진술에 따른 최○○의 3녀는 ‘최○○(崔○○, 1931년생)’이다. 신청인 최○복은 2마-6356으로 진실규명대상자 ‘최○○(1931년생)’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으나 “최○○은 적대세력에 희생된 것이 아닌 자연사로 사망하였기에 신청을 취하한다.”라고 하며 진실규명 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고인 진술 조사 후 신청인 최○복에게 재차 확인한 바 “내가 잘 몰라서 착각을 했다. 셋째 누나도 당시 돌아가신 게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4. 8. 22.); 신청인 최○복 통화보고서(2024. 11. 25.);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취하건 종결처리 보고(사건번호 마-6356, 기-****, 다-****)」(대외협력담당관-1953, 2021. 12. 29.).

52) “우리 옆집에는 아이들 다섯 명을 장롱에 숨겨두었다가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모두 아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는 일도 있었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4. 8. 22.).

5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4. 8. 22.).

54) 참고인 김○○은 자신의 아버지 김○○이 같은 날 희생되었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으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진실규명대상자 임○이의 상해 사실을 목격하였고 그후 진실규명대상자 최○울·최○달의 동생 최○○과 결혼을 하며 두 사람의 희생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4. 8. 22.).

55) 참고인 김○○은 당시 마을회관은 지금 지경교회 자리라고 진술하였다. 지경교회의 지번은 송라면 지경리 76-100이다. 참고인 김○○은 아버지 김○○이 그날 동회에 참석했다가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4. 8. 22.).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 따르면 김○○은 당시 지경리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마을을 습격한 공비들은 단장 김○○ 외 단원들을 일시에 사살한 다음 마을을 포위하고 집집마다 기름을 뿌리고 방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경리의 붉은 만행」: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좌익들은 집집마다 불을 붙이고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사살하였다. 당시 임○이의 집은 큰길가에 있었다. 당시 임○이의 집에는 임○이와 자녀들만 남아 있었다. 임○이의 어린 자녀 최○○, 최○복은 이불 속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임○이의 자녀 최○○와 최○울, 최○달은 좌익의 죽창에 찔려 희생되었다. 좌익들은 최○○가 숨은 이불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최○○ 또한 골반을 다쳐 평생 골반에서 ‘딱딱’소리가 나는 상해를 입었다. 한편, 좌익들은 임○이를 창으로 찔렀으나 임○이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창자가 모두 튀어나오는 상해를 입은 임○이는 당시 수술은 받았으나, 평생 조금만 무리를 하면 배가 붓곤 하여 밖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다.⁵⁶⁾

제적등본에는 최○울과 최○달이 1950년 2월 4일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⁵⁷⁾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1987)에는 1949년 11월 6일 밤 송라면 지경리 대한청년단 단장 김○○과 단원들이 마을 경비를 하던 중 괴한들이 마을 주민 두 명을 위협하여 무기를 운반하는 데 동원시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괴한들에게 협조한 마을 주민 두 명은 곧장 청년단에게 이를 알렸고, 단장 김○○ 외 3명은 이를 송라지서에 신고하였다. 경찰당국은 3일간 일대에서 수색작전을 펼쳐 무기를 다수 노획하였으며 30여 명의 공비를 사살하였다. 공비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1950년 2월 4일 밤 8시 40분경 송라면 지경리를 습격하였다. 당시 약 50명의 무장공비가 마을을 습격하였으며, 지경리는 80호 중 52호 61동이 불타고 부상 65명, 사망 34명, 도합 99명의 사상자를 내었다고 한다.(증언: 포항 온교회 회원 일동)⁵⁸⁾

『조선일보』(1950. 2. 7.), 『남조선민보』(1950. 2. 9.)에 따르면, 경북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에 폭도가 침입하여 1950년 2월 4일 오후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40분간 방화와 살인을 자행했다. 이때 마을에서 79동이 전소하였고 사망자 34명(그 중 여자 21명)과 다수의 중상자를 내었다.⁵⁹⁾

『경북경찰발전사』에는 “1950년 2월 4일 송라면 지경동 1구에 무장공비 약 40명이 침입, 무기양륙사건이 송라면민 신고에 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양민 34명을 살해하고 가옥 60동 방화 전소케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⁶⁰⁾

신청인의 진술, 제적등본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최○울과 최○달의 희생 시기와 임○이의 상해 시기는 1950년 2월 4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최○복이 최○울, 최○달, 임○이의 희생 및 상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최○○가 최○울, 최○달의 희생 장면 및 시신 수습과 임○이의 상해를 목격한 점, (3) 참고인 김○○가 최○울, 최○달의 희생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임○이

5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4. 8. 22.).

57) ‘호주 최○○ 계출 3월 7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은 임○이의 배우자, 최○울·최○달의 아버지이다.

58) 「지경리의 붉은 만행」: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87, 110쪽~112쪽.

59) 『조선일보』에는 61동 전소, 사망자 2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남조선민보』에는 79호 소각, 34명(그중 여자 21명)이 살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영일군하 반도 또 만행」, 『조선일보』(1950. 2. 7.); 「영일군에서 폭도만행 79호 소거코 양민살상」, 『남조선민보』(1950. 2. 9.).

60) 경북경찰지방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55쪽.

가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로 인해 고생하는 모습을 목격 진술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4) 최○울, 최○달의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5) 『조선일보』, 『남조선민보』, 『경북경찰발전사』,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에서 사건 경위가 확인되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6) 자택에서 최○울과 최○달의 시신이 수습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 대상자 최○울(2마-6357)과 최○달(2마-6358)은 1950년 2월 4일 송라면 지경리 자택에서 마을을 습격한 무장공비에게 희생되었으며, 임○이(2마-6359)는 같은 날 무장공비에게 죽창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라) 진실규명대상자 윤○울(2마-12092, 신청인 윤○수)

진실규명대상자 윤○울(尹○律, 1926년생, 청년단장)은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에 거주하던 중, 1950년 9월경 인민군의 총격을 받고 불상지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윤○수(1950년생, 아들)의 전문⁶¹⁾ 진술에 따르면, 윤○울은 지주 집안으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윤○울은 그 땅을 관리하며 하송리 대동청년단장을 하였다. 당시 대동청년단 부단장이○○가 좌익에 의해 연행되어 나무에 묶여 총살을 당하였으며, 윤○울은 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⁶²⁾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9월 23일(음력 8월 12일) 윤○울은 ‘북한 김일성을 죽이러 간다.’라며 장총을 들고 영덕 방향으로 갔다. 그후 윤○울은 불상지에서 사망하였다. 윤○울의 희생 소식을 들은 윤○울의 어머니 김○○가 일꾼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옷가지와 소지품을 보고 윤○울의 시신을 찾은 후 시신을 화장해 왔다. 가족들은 음력 8월 14일(양력 1950년 9월 25일)에 윤○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⁶³⁾

참고인 장○○(1944년생, 주민)의 목격 및 전문⁶⁴⁾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윤○울은 마을 청년단장을 하며 마을 뒷산에서 경비를 서곤 하였다. 1950년 9월 무렵⁶⁵⁾ 윤○울은 마을 주민 김○○, 이○○와 함께 피난을 갔다. 피난을 가던 중 세 사람을 본 인민군은 총격을 가하였다.⁶⁶⁾

61) 신청인 윤○수는 진실규명대상자 윤○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할머니 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윤○수 진술조서(2023. 12. 6.).

62) 신청인 윤○수는 송라면 하송리 대한청년단 부단장이 ‘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는 송라면 하송리에 거주하던 ‘이○○’가 1949년 8월 20일 대한청년단 리단장으로 부락 경비 중 공비에게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따르면 대한청년단 하송리 단장은 이○○로, 신청인이 아버지 윤○울이 대한청년단의 단장, 이○○가 부단장이라고 진술한 것과 직위상 차이가 있지만 대한청년단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진술과 일치한다.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131번).

63) 신청인 윤○수 진술조서(2023. 12. 6.).

64) 참고인 장○○는 진실규명대상자 윤○울의 묘를 만드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난을 다녀온 후 윤○울의 희생을 목격한 마을 주민 김○○, 이○○에게 윤○울의 희생 경위 등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4. 8. 22.).

65) 참고인 장○○는 “나는 피난을 갔다가 추석이 지나고 마을에 돌아와 마을 주민들에게 윤○울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 윤○울이 희생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안강전투가 난 뒤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안강전투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생하였고, 1950년 추석은 9월 26일이다. 따라서 참고인 장○○의 진술에 따른 사건 발생시기는 1950년 9월 무렵으로 보인다.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4. 8. 22.); 온창일 외, 『한국전쟁사 부도』, 84~87쪽, 도서출판 황금알.

66) 신청인 윤○수는 윤○울이 장총을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윤○수가 말하는 윤○울이 집을 나선 이유와 참고인 장○○가 말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윤○울이 전투 또는 호신을 위해 장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민군은 이를 이유로 윤○울 일행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윤○수 진술조서(2023. 12. 6.);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4. 8. 22.).

김○○과 이○○는 윤이 좋게 살아 남았지만, 윤○울은 다리에 총을 맞고 앓은 채로 사망하였다. 김○○과 이○○가 마을에 돌아와 윤○울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윤○울의 희생 장소를 알려 주었고, 윤○울의 가족들은 현장에 가서 시신을 화장하여 가지고 왔다. 참고인 장○○는 윤○울의 가족들이 화장한 시신을 수습해 와 묘를 만드는 모습을 목격하였다.⁶⁷⁾

참고인 윤○○(1932년생, 조카)의 전문⁶⁸⁾ 진술에 따르면, 윤○울이 희생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추석 전(1950년 9월 26일 전)이다. 윤○울의 시신은 수습되었으며 윤○울은 인민군에게 살해되었다.⁶⁹⁾

제적등본에는 윤○울이 1950년 9월 16일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⁷⁰⁾ 족보에는 윤○울이 1950년 8월 16일(양력 1950년 9월 27일)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⁷¹⁾

1956년 청하초등학교에 입학한 윤○울의 아들 윤○수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⁷²⁾

신청인의 진술, 제적등본, 제삿날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윤○울의 희생 시기는 1950년 9월경으로 판단 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윤○수가 윤○울의 희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장○○가 윤○울의 희생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3) 참고인 윤○○가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4) 윤○울의 제삿날, 제적등본 사망일, 족보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5) 윤○울의 시신이 가족들에 의해 수습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윤○울(2마-12092)은 1950년 9월경 불상지에서 인민군의 총격을 받고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2) 고령군

진실규명대상자 정○현(2마-14642) 등 가족 8명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 1949년 3월 15일경에는 지방 좌익에게, 1950년 8월경에는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게 세 차례에 걸쳐 희생되었다. 정○현 가족의 가계도는 <그림 4>와 같으며, 희생 사건 개요는 <표 3>과 같다.

67)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4. 8. 22.).

68) 참고인 윤○○는 진실규명대상자 윤○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마을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윤○○ 진술조서(2024. 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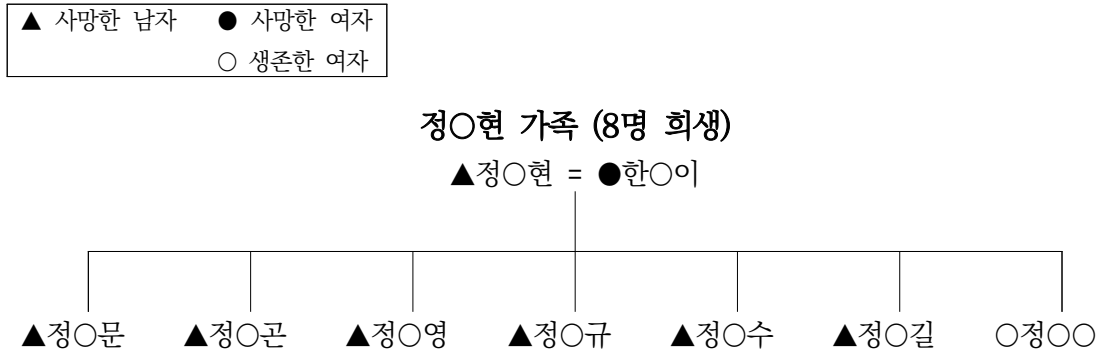
69) 참고인 윤○○ 진술조서(2024. 8. 22.).

70) '동거자 신○○ 계출 동년 12월 23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는 진실규명대상자 윤○울의 배우자이다.

71) '경인팔월십육일 줄『파평윤씨대통보』(권자삼, 2011) 825쪽; 진실규명대상자 윤○울의 족보명은 '동경(炯璟), 초명창율'로 기재되어 있다.

72) 청하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에 따른 자료 회신」(청하초등학교-10631, 2024. 11. 28.).

〈그림 4〉 정○현 가족 가계도



〈표 3〉 고령군 우곡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개요

연번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희생 장소	희생 시기	구분
1	고령군 우곡면 정○현 가족 희생 사건	정○문	우곡면 대곡동	1949년 3월	1차
2		한○이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3		정○곤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4		정○영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5		정○규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6		정○수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2차
7		정○현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3차
8		정○길	우곡면 사전동	1950년 8월	3차

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2마-15789, 신청인 정○규)

진실규명대상자 정○문(鄭○汶, 1914년생, 농업)은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에 거주하던 중 1949년 3월 15일경 거주지 인근에서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고 좌익에게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에게 희생되었다.

신청인 정○규(1980년생, 손자)와 참고인 추○○(1948년생, 며느리)의 전문⁷³⁾ 진술에 따르면, 정○문은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에 거주하면서 우곡면 대한청년단원(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49년 3월 15일 좌익세력 3명이 정○문을 유인하며 어디론가 데리고 간 후 살해하였다. 다음날 정○문과 함께 출근을 하려던 사람이 정○문을 찾다가 마을 구석 쪽에 정○문의 시신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식을 들은 정○문의 형제들이 정○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가족들은 정○문의 제사를 음력 2월 19일(1949년 양력 3월 18일)에 지내고 있다.⁷⁴⁾

73) 신청인 정○규는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참고인 추○○는 신청인 정○규 진술 조사에 동석하였다. 참고인 추○○는 집안 어른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규·참고인 추○○ 진술조서(2023. 2. 9.).

74) 신청인 정○규·참고인 추○○ 진술조서(2023. 2. 9.).

참고인 정○○(1946년생, 딸)의 목격 및 전문⁷⁵⁾ 진술에 따르면, 1949년 양력 3월 14일 밤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문을 밖으로 불러내어, “면에 급한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정○문의 동생 정○영⁷⁶⁾이 출근⁷⁷⁾을 하기 위해 정○문을 찾다가 정○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침 식사 중이던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나가 현장에서 정○문의 시신을 수습했다. 참고인 정○○은 아버지 정○문의 시신을 수습해온 것을 목격하였다. 면(面)에서 장례를 치러 준다고 하였으나 조용히 가족장을 지냈으며, 정○문의 희생시기는 1949년 3월 15일경이다.⁷⁸⁾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오○○(1932년생,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우곡면 대한청년단 단장 정○문은 좌익에게 희생되었다. 참고인 오○○의 아버지 오○○⁷⁹⁾은 한민당 당원으로 돈이 많은 편에 속했다. 오○○은 좌익들의 괴롭힘에 못이겨 서울로 도피하였지만 오○○의 지인이자 우곡면 대한청년단 단장 정○문은 고령에 남아있다가 좌익에게 희생되었다.⁸⁰⁾

참고인 정○(1951년생, 조카)의 전문⁸¹⁾ 진술에 따르면, 정○문은 청년단체 단장이었다. 지방 좌익은 정○문에게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하였으나 정○문은 이를 거절하였고, 정○문은 지방 좌익들의 테러에 의해 희생되었다.⁸²⁾

참고인 정○상(1951년생, 조카)의 전문⁸³⁾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정○문은 청년단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정○문에게 남로당 가입을 권유했고, 정○문은 이를 거부하였다. 정○문은 이를 이유로 살해당하였다.⁸⁴⁾

참고인 정○상(1951년생, 조카)의 전문⁸⁵⁾ 전문 진술에 따르면, 지방 좌익이 정○문에게 공산당 입당을 권유했으나, 정○문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방 좌익들에게 테러를 당해 희생되었다.⁸⁶⁾

1953년 우곡초등학교에 입학한 정○문의 딸 정○○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75) 참고인 정○○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연행, 시신, 장례식 등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외 사건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76) 2마-15369호 진실규명대상자이다.

77) 참고인 정○○은 “당시에 정○영 삼촌과 아버지 정○문은 매일 아침 함께 면으로 출근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대한청년단 활동으로 보인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78)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7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오○○은 아버지 오○○이 한청단장 정○문과 친한 우익인사였지만 순경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2009. 9. 8.)에서 진실규명결정(다-10425호, 희생 확인)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

8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8. 4. 2.).

81) 참고인 정○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사건을 목격한 친형 정○○과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참고인) 정○ 진술조서(2022. 12. 9.).

82) 신청인(참고인) 정○ 진술조서(2022. 12. 9.).

83) 참고인 정○상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참고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84) 신청인(참고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85) 참고인 정○상은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참고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27.).

86) 신청인(참고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27.).

기재되어 있다.⁸⁷⁾

제적등본에는 정○문이 1949년 3월 15일 고령군 우곡면 대곡동 183번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⁸⁸⁾, 족보에는 1950년 2월 21일(38세)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⁸⁹⁾

고령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사확인서』(1967. 5. 20.)⁹⁰⁾에는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에 대해 “대한청년단원으로서 향토방위 및 경비책임자로 헌신하여 활약하여 오던 중 반공사상이 투철한 상기자를 1949년 3월 15일 오전 7시 30분경, 남로당 괴뢰이 침입하여 본가에서 2km 떨어진 산기슭(우곡면 대곡동 183)까지 정○문을 결박하여 끌고가 총살하였기에 순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 5〉 정○문의 전사확인서 및 정○문의 배우자 정○○의 청원서



『부산일보』(1951. 5. 8.)에는 “경찰특무원을 학살하고 그의 유가족 마저 학살한 남로당원을 체포하여 우리 경찰 수사진에 개가를 올렸다. (중략) 동(同) 우곡면 용기리 사천동 경찰특무원 정○문(40)씨를 소위 반동분자라고 하여 일본도와 곤봉으로써 살해하고 다시 범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육이오사변 이후 괴뢰군 남침을 계기로 거년 □월 중순경 전기 정씨의 유가족 남녀노유 8명 전원을 가진 수단으로 모조리 학살하고 도주 (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⁹¹⁾

『매일신문』(1961. 8. 5.)에는 “(전략) 81년 2월 19일 이 마을에서 대한청년단 동단장으로 반공전선의 앞장을 서서 동네 사람들이 자칫하면 물들기 쉬운 공산주의 사상을 말살하는 데 힘을 써온 정○문(당시 42세)씨가 이날 밤 늦게 난데없이 경남 합천 고을로부터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 달려들어온 여러놈의 「빨치산」에게 끌려나와 우곡면 사무소 소재지 근처인 「관내 나무」에서 칼로 목을 찔려 비참한 죽음을 당한 데서부터 이 집의 원한에 사무친 슬픈 이야기는 비롯된다.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⁹²⁾

87) 우곡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 회신(정○조)」(우곡초등학교-9448, 2024. 11. 27.).

88) ‘호주 정○현 계출 1950년 3월 20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현은 정○문의 아버지이다.

89) 『진양정씨족보 중파자손록』(2005 을유보, 진양정씨대종회) 2-93페이지.

90) 신청인 정○규가 진실규명신청서(2022. 11. 2.)와 함께 제출하였다.

91) 「유가족까지 학살, 악질 남로당원 체포」, 『부산일보』(1951. 5. 8.).

92) 「분사(憤死)한 여덟 무덤, 한청의 한집안 세 차례에 학살」, 『매일신문』(1961. 8. 5.).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삿날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의 희생 시기는 1949년 3월 15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정○규가 정○문의 희생 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정○○가 정○문의 희생경위와 시신수습에 대해 목격한 점, (3) 참고인 추○○, 정○, 정○상, 정○상, 오○○이 정○문의 희생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4)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5) 고령경찰서 발급 『전사확인서』에 정○문의 희생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6)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에 정○문의 희생이 보도된 점, (7) 정○문의 시신이 가족들에 의해 수습된 점문(2마-15789)은 1949년 3월 15일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거주지 인근에서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고 좌익에게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에게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진실규명대상자 정○현·한○이·정○길(2마-14642·14643·14649, 신청인 정○상), 정○곤·정○규·정○수(2마-5656·14645, 7148·14647, 7149·14648, 신청인 정○·정○상), 정○영(2마-15369, 신청인 정○상)

진실규명대상자 정○현(鄭○鉉, 1878년생, 농업), 한○이(韓○伊, 1891년생, 주부), 정○곤(鄭○坤, 이명 정○권, 1918년생, 농업), 정○영(鄭○永, 이명 정○두, 1924년생, 농업), 정○규(鄭○圭, 1927년생, 농업), 정○수(鄭○守, 1934년생, 학생), 정○길(鄭○吉, 1942년생, 학생)은 가족으로 1950년 8월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거주지 등에서 대한청년단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 등에게 희생되었다.

신청인 정○상(1951년생, 정○규의 아들)의 전문⁹³⁾ 진술에 따르면, 정○현, 한○이는 여섯 아들과 함께 우곡면 사전동에 거주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전, 정○현의 장남 정○문이 대한청년단으로 활동하던 중 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⁹⁴⁾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고령지역을 점령했을 당시 나머지 가족들은 피난을 가지 못하였는데, 인민군 협력자 박○○과 인민군은 1950년 8월 6일(음력 6월 23일)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를 우익집안이라는 이유로 산으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정○현과 정○길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인민군에게 살해되었다. 인민군이 후퇴한 뒤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시신을 발견하여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시신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뒤에 수습하여 시신이 많이 부패되어 있었다.⁹⁵⁾

신청인 정○(1951년생, 정○곤의 아들)의 전문⁹⁶⁾ 진술에 따르면, 정○현과 한○이, 그 아들 6형

93) 신청인 정○상은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94)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령의 좌익들 사이에 정씨 집안은 인민군이 죽여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95)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8.).

96) 신청인 정○은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사건을 목격한 친형 정○○과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 진술조서(2022. 12. 9.).

제는 우곡면 사전동에 함께 살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전, 정○현의 장남 정○문은 청년단장이라는 이유로 좌익에게 살해되었다. 1950년 8월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한 뒤 마을 좌익인사인 박○○이 정○현의 집안을 인민군에게 고발하였다. 당시 정○곤은 피신 중이었는데 박○○은 그 장소를 찾아 인민군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정○현의 가족들은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고, 1950년 8월 7일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가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얼마 후 인민군은 6형제의 아버지 정○현과 막내 정○길도 살해하였다. 희생된 7명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이후 수습되었다.⁹⁷⁾

신청인 정○상(1951년생, 정○영의 아들)의 전문⁹⁸⁾ 진술에 따르면, 정○현과 한○이의 슬하에는 6명의 형제와 막내딸 정○○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 곳에 살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전, 6형제 중 첫째인 정○문이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 당시 정○문의 장례식에서 상여가 나갈 때 박○○의 집에 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후 정○문의 형제들은 박○○ 등 마을 좌익들의 기를 죽여놓았고, 박○○ 등 좌익들은 정씨 집안에 앙심을 품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나갔지만 정○현은 “집을 두고 어딜 가냐.”라고 하며 피난을 가지 않았다.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한 후, 박○○은 인민군에게 정○현의 집안을 고발하였다. 정○현의 가족들은 마을 뒤 방공호에 숨어 있었는데, 이를 인민군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1950년 8월 7일(음력 6월 24일) 한○이와 정○곤, 정○영, 정○규, 정○수가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 형들이 희생되자 막내 정○길은 좌익 인사 집안 여자들에게 욕을 하였고, 얼마 후 인민군은 정○현과 정○길까지 마을 근처 골짜기에서 살해하였다. 일곱 식구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방치되었다가 인민군이 돌아간 후 수습되었다.⁹⁹⁾

참고인 정○○(1946년생, 정○문¹⁰⁰⁾의 딸)의 목격 및 전문¹⁰¹⁾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후 정○현의 가족들은 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런데 동네 좌익 박○○이 인민군들에게 밀고하여 정○현의 피난처에 쳐들어 왔다. 인민군은 한○이와 정○곤, 정○영, 정○규, 정○수를 새끼줄로 묶어 연행한 뒤 대밭에서 무릎을 꿇린 후 총살하였다. 며칠 후 인민군과 좌익들은 정○현과 정○길까지 죽창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인민군들은 정○현의 집 사랑채를 인민군 본부로 사용하고, 남은 가족들을 구타하기도 했다. 희생된 가족들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한 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입고 있던 옷을 보고 모두 수습하였다. 인민군이 후퇴할 때 좌익 앞잡이 박○○은 도망을 갔다가 체포되었다고 한다.¹⁰²⁾

참고인 추○○(1948년생, 조카며느리)의 전문¹⁰³⁾ 진술에 따르면, 1949년 3월 15일에 좌익세력

97) 신청인 정○ 진술조서(2022. 12. 9.).

98) 신청인 정○상은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어머니 심○○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27.).

99) 신청인 정○상 진술조서(2023. 2. 27.).

100) 여섯 형제의 장남으로 1949년 3월 지방 좌익에게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 신청된 2마-15789의 진실규명 대상자이다.

101) 참고인 정○○는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연행, 시신, 장례식 등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외 사건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102)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4. 8. 29.).

103) 참고인 추○○는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규·참고인 추○○ 진술조서(2023. 2. 9.).

이 6형제의 장남 정○문을 살해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은 정○문의 어머니 한○이와 다른 네 형제를 살해하였다. 얼마 후, 인민군은 정○문의 아버지 정○현과 당시 8살이던 막내까지 살해하였다. 인민군이 후퇴한 다음에 경찰이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입은 옷을 보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⁴⁾

제적등본에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는 1950년 8월 7일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56번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¹⁰⁵⁾, 정○현과 정○길은 1950년 8월 21일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49번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⁰⁶⁾

족보에는 한○이, 정○곤, 정○영(죽보명 정○두), 정○규가 1950년 6월 24(1950년 양력 8월 7일)일에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현이 1950년 7월 8일(1950년 양력 8월 21일)에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¹⁰⁷⁾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의 제사는 음력 6월 23일에 지내고 있고, 정○현, 정○길의 제사는 음력 7월 7일에 지내고 있다.¹⁰⁸⁾

공보처에서 1952년에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1952년도)』에 진실규명대상자 7명이 등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7명 모두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¹⁰⁹⁾

연번	성 명 (이명)	제적등본 (한자/본적/사망일)	6·25사변 피살자 명부 (한자/본적/피살년월일)
1	정○현	鄭○鉉/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21.	鄭○鉉/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2	한○이	韓○伊/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韓○伊/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3	정○곤 (정○권)	鄭○坤/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鄭○權/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4	정○영 (정○두)	鄭○永/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鄭○斗/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5	정○규	鄭○圭/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鄭○圭/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6	정○수	鄭○守/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7.	鄭○守/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7	정○길	鄭○吉/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21.	鄭○吉/고령군 우곡면 사전동/1950. 8. 15.

『부산일보』(1951. 5. 8.)에는 남로당원이 “(전략) 동(同) 우곡면 용기리 사전동 경찰특무원 정○문(40)씨를 소위 반동분자라고 하여 일본도와 곤봉으로써 살해하고 다시 범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104) 신청인 정○규·참고인 추○○의 진술조서(2023. 2. 9.).

105) “동거자 정○○(사촌) 계출 1951년 1월 25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06) “동거자 정○○(사촌) 계출 1951년 1월 25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07) 『진양정씨족보 중파자손록』(2005 을유보, 진양정씨대종회) 2-93페이지~2-94페이지. 신청인 정○은 진실규명대상자 정○수, 정○길이 희생 당시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족보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정○ 전화통화보고(2024. 11. 8.).

108) 신청인 정○ 통화보고서(2024. 11. 26.).

109)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기재된 한○이의 한자(仙)가 실제 이름의 한자(順)과 상이하였고, 정○곤과 정○영은 이명으로 기재되었다. 하지만 일곱 사람의 희생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한○이’와 ‘한○이’의 발음이 유사한 점, 신청인 정○이 ‘정○곤’의 이명은 정○권, 정○영의 이름은 정○두이다.’라고 진술한 점, 족보에 정○영은 ‘정○두’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 1952; 월간조선사, 『피살자 5만9994명』, 2003; 신청인 정○ 통화보고서(2024. 11. 8.).

육이오사변 이후 괴뢰군 납치를 계기로 거년 □월 중순경 전기 정씨의 유가족 남녀노유 8명 전원을 학살하고 도주(후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¹¹⁰⁾

『매일신문』(1961. 8. 5.)에는 “(전략) 청년단 동단장을 지내고 있는 ○문씨의 동생 정○두씨를 비롯해서 같은 형제인 ○곤, ○규, ○수 제씨와 이들의 어머니인 한모씨(당시 57세)까지 합하여, 5명의 한가족을 묶어 마을에서 약 3백미터 떨어진 「구시골」까지 끌고 가서는 죽창으로 온몸을 마구 찢러 한데 몰살해버린 것이다 (중략) 괴뢰군은 또다시 이 집에 나타나 남아있던 이 집의 호주 정○현(당시 62세) 씨와 그의 막내 아들 ○길(당시 10세) 군마저 「동산골」에 끌고 올라가 총살하고 말았던 것이다.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¹¹¹⁾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삿날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 정○길의 희생 시기는 1949년 8월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정○상, 정○, 정○상)이 정○현 등 7명의 희생경위와 시신수습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정○○와 추○○이 정○현 등 7명의 희생경위와 시신수습에 대해 직접 목격하거나 전문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3)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제적등본 사망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점, (4) 『6·25사변 피살자 명부』상의 명단과 진실규명대상자 7명이 일치하는 점, (5) 『부산일보』, 『매일신문』 기사에서도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정○현, 한○이, 정○길(2마-14642, 14643, 14649), 정○곤, 정○규, 정○수(2마-5656·14645, 7148·14647, 7149·14648), 정○영(2마-15369)은 1950년 8월경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거주지 등에서 대한청년단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3) 예천군

- 진실규명대상자 장○봉(2마-12437, 신청인 장○현)·장○달(2마-12438, 신청인 이○옥)·장○걸(2마-12439, 신청인 조○순)·장○대(2마-12440, 신청인 장○배)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규명대상자 장○봉(張○逢, 1912년생, 농업)과 장○달(張○達, 1918년생, 농업)은 형제이고 장○걸(張○杰, 1918년생, 농업)과 장○대(張○大, 1921년생, 기타¹¹²⁾)는 이웃으로 1950년 9월 1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거주지에서 청년단장, 마을 동장, 면서기 등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들에게 연행되어 월포동 오백이재에서 희생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2009. 10. 20.)에서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110) 「유가족까지 학살」, 『부산일보』(1951. 5. 8.).

111) 「분사(憤死)한 여덟 무덤, 한청의 한집안 세 차례에 학살」, 『매일신문』(1961. 8. 5.).

112) 신청인과 참고인은 장○대가 면서기로 근무했다고 진술했지만 관련한 재직 기록이 없었다. 예천군, 「재직 기록 조회결과 회신」(총무과-8335, 2024. 11. 11.); 호명읍, 「조사 협조 의뢰(재직 기록 요청) 회신」(호명읍-11693, 2024. 11. 18.); 신청인 장○현 진술조서(2023. 8. 18.); 신청인 장○배 진술조서(2023. 8. 1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장○달, 장○걸, 장○대를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하였다.¹¹³⁾

신청인 장○현(1938년생, 장○봉의 아들)의 목적 및 전문¹¹⁴⁾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예천까지 내려오던 무렵, 호명면 담암동에는 장○○ 등의 좌익세력들이 활동하였다. 한편 인민군이 내려온 뒤 예천경찰서 순경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담암마을로 피난을 왔다. 장○○ 등 좌익들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자 당시 마을 구장이었던 장○봉은 “그럴 필요 있냐.”라고 하였다. 장○○ 등 좌익들은 순경의 어머니와 며느리, 갓난아기를 산 너머 냇가로 끌고 가서 죽였다.¹¹⁵⁾ 그 후 장○○ 등 좌익들은 장○봉이 자신들과 사상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며칠 후 낮, 장○○ 등 좌익들은 장○봉과 그 동생 장○달, 청년단장 이○○¹¹⁶⁾, 면서기 장○대, 잘 살던 장○걸, 부녀회장이자 장○봉의 조카였던 이○○를 불러내어 호명지서로 데려갔다.¹¹⁷⁾ 1950년 9월 1일(음력 7월 19일), 지서에 갇혔던 여섯 사람은 예천으로 넘어가는 길인 오백이재로 끌려갔다. 그리고 좌익들은 부녀회장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을 총살하였다. 이○○의 아버지가 장○○에게 돈을 좀 주었기 때문에 이○○만 살아날 수 있었고, 이○○는 마을로 도망쳐와 다섯 사람이 희생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장○봉의 6촌 장○○가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해 와 마을에 매장하였다. 가족들은 음력 7월 18일(1950년 8월 30일)에 장○봉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¹¹⁸⁾

신청인 이○옥(1944년생, 장○달의 며느리)의 전문¹¹⁹⁾ 진술에 따르면, 장○달은 형 장○봉, 마을 주민 장○걸, 장○배의 아버지 장○대, 이○○과 함께 총살되었다. 장○달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장○달의 가족들은 현재 음력 7월 18일(1950년 8월 31일)에 장○달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¹²⁰⁾

신청인 조○순(1952년생¹²¹⁾, 장○걸의 며느리)의 전문¹²²⁾ 진술에 따르면, 장○걸은 마을 주민인

113)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네 사람을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규명결정할 당시 장○달, 장○걸, 장○대의 제적등본을 확보하여 사망신고 기록을 확인하였다. (1)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2009. 10. 20.) 진실규명결정서에 기재된 장○달, 장○걸, 장○대의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진실규명대상자 장○달, 장○걸, 장○대의 제적등본상 사망일과 일치하는 점, (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은 장○달이 장○봉의 동생이라고 진술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이 형제인 사실이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점에 따라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장○봉, 장○달, 장○걸, 장○대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1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114) 신청인 장○현은 아버지 장○봉이 좌익들에게 불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도망쳐온 외사촌 누나 이○○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장○현 진술조서(2023. 8. 18.).

115) 『피해자현황조사』(2007)에서 신청인 장○현은 그 순경의 이름이 양○○이라고 진술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332~335쪽.

116) 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지역 적대세력 사건」(2009. 10. 20.)에서 진실규명결정(마-6041, 희생 확인)되었다.

117) 『피해자현황조사』(2007)에서 참고인 이○○(이○○)는 여섯 사람이 처음에는 호명면사무소에 구금되었다가 호명지서로 옮겨졌다고 증언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332~335쪽.

118) 신청인 장○현에 따르면, 다섯 사람을 죽인 좌익들은 다섯 사람의 집도 빼앗으려고 하였다. 좌익들은 각자 어느 집을 빼앗을지 나눴는데, 장○봉의 집을 고른 장○○는 장○봉을 살해한 후 장○봉의 집 마루에 와서 누웠다 가기도 하였다. 국군 수복 후 장○○는 월북하였다가 다시 마을에 돌아왔다. 신청인 장○현은 “우리가 하루 저녁을 가서 푸닥거리를 하였지만 그 분은 한 마을에 같이 살다가 자연사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장○현 진술조서(2023. 8. 18.); 신청인 장○현 통화보고서(2024. 11. 25.).

119) 신청인 이○옥은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장○걸의 배우자 최○○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이○옥 진술조서(2023. 8. 18.).

120) 신청인 이○옥 진술조서(2023. 8. 18.).

121) 신청인 조○순은 호적상 1952년생이지만 실제 1948년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조○순 진술조서(2023. 8. 18.).

122) 신청인 조○순은 호적상 1952년생이지만 실제 1948년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조○순 진술조서(2023. 8. 18.).

장○현의 아버지 장○봉, 이○옥의 시아버지 장○달, 장○배의 아버지 장○대, 이○○의 아버지 이○○과 함께 새끼줄에 묶인 채로 오백이재에서 총살되었다. 장○걸의 배우자 최○○이 현장에 가서 여러 시신 중에 장○걸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였다. 장○걸의 가족들은 음력 7월 18일(1950년 8월 31일)에 장○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¹²³⁾

신청인 장○배(1945년생, 장○대의 아들)의 전문¹²⁴⁾ 진술에 따르면, 장○대는 호명면사무소 호적계 직원이었다. 1950년 9월 1일 아침 좌익 한 명이 장○대를 찾아와 퇴근 후 저녁 7시까지 집회장(동회관)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퇴근을 한 장○대가 동회관에 가보니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장○봉, 장○달, 장○걸, 이○○, 이○○가 이미 불러 와 있었다. 좌익들은 여섯 사람을 새끼줄로 묶어 호명면사무소로 끌고 갔다. 그날 밤 11시 30분경 여섯 사람은 다시 호명지서로 옮겨져 구금되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경, 좌익들은 여섯 사람을 월포동 오백이재 계곡으로 끌고 갔다. 좌익은 여섯 명의 머리에 수건을 씌우고 유언을 물어보았는데, 장○대는 “나는 억울하게 죽지만 내 부모님과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였다. 그후 좌익들은 장○대, 장○봉, 장○달, 장○걸, 이○○을 한 사람씩 총살하였다. 좌익들은 사전에 이○○의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두 총살한 후 이○○를 밀쳐 넘어트린 뒤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며 풀어주었다. 소식을 들은 장○대의 배우자, 형제들이 현장에 가서 장○대의 시신을 수습하였다.¹²⁵⁾ 그후 가족들은 음력 7월 18일(1950년 8월 31일)에 장○대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¹²⁶⁾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1921년생, 이웃)의 목격¹²⁷⁾ 진술에 따르면, 담암마을 좌익 중에는 장 씨가 많았다. 1950년 9월 1일 좌익들은 이○○, 장○봉, 장○달, 장○걸, 장○대를 연행하여¹²⁸⁾ 오백이재에서 살해하였다. 소식을 들은 다섯 명의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오백이재로 갔다. 현장에 시신들은 총과 칼로 난도질 당한 채 죽어 있었다. 다섯 명의 가족들은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와 음력 7월 18일에 제사를 지냈다.¹²⁹⁾

『피해자 현황 조사』(2007)에는 현장에서 살아나온 이○○(이○○)¹³⁰⁾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다.

122) 신청인 조○순은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시어머니 최○○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조○순 진술조서(2023. 8. 18.).

123) 신청인 조○순 진술조서(2023. 8. 18.).

124) 신청인 장○배는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사실 등 사건 내용을 할머니 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장○배 진술조서(2023. 8. 18.).

125) 『피해자현황조사』(2007)에서 신청인 장○배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시신들은 7~8발의 총상을 입어 신원 식별이 어려웠으나 인상착의, 신발, 옷 등으로 서로를 확인하여 수습할 수 있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332~335쪽.

126) 신청인 장○배 진술조서(2023. 8. 18.).

12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은 당시 장○봉, 장○달, 장○걸, 장○대와 함께 희생된 이○○의 배우자로, 네 진실규명대상자의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12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이○○은 대한청년단 단장이었다는 이유, 장○봉은 구장이었다는 이유, 장○달은 장○봉의 동생이었다는 이유, 장○걸은 일본에서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이유, 장○대는 면서기였다는 이유로 좌익들에게 불려가 사상검증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12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3. 9.).

130) 『피해자현황조사』에는 증언자의 이름이 ‘이○○’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호적상 이름은 ‘이○○(1933. 10. 19.)’이다. 호명읍, 「조사 협조 의뢰(신원 확인 요청) 화신」(호명읍-11544, 2024. 11. 14.).

이에 따르면 좌익에 의해 불려나간 이○○는 장○봉, 장○달, 장○걸, 장○대, 이○○과 함께 새끼줄에 묶여 호명면사무소에 구금되었다. 면사무소에서 좌익들은 면서기에게 “면사무소에서 얼마나 잘 벌었냐.”라는 이유, 동장에게는 “동장질을 하면 동네가 네 나라냐.”라는 이유, 한 명은 청년단장이라는 이유, 이○○에게는 순경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를 대면서 각목 등으로 여섯 명을 구타하였다. 당시 남자들은 팔다리가 모두 부러졌으며 이○○는 머리에 흉터가 생겼다. 다음 날 좌익 7~8명은 여섯 명을 묶고 눈을 가린 뒤 오백이재로 데리고 간 후 남자 다섯 명을 총살하였다. 이○○의 아버지가 시계와 소 두 마리 판 돈을 뇌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만이 살아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제적등본에 장○봉은 1950년 7월 20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216번지(본적지)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고,¹³¹⁾ 장○달은 1954년 12월 17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277번지(본적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¹³²⁾ 장○걸은 1950년 7월 17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192번지(본적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¹³³⁾ 장○대는 1950년 9월 20일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230번지(본적지)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³⁴⁾

족보에는 장○대가 1950. 7. 19.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¹³⁵⁾

공보처 통계국의 『6·25사변 피살자 명부』(1952)에는 진실규명대상자 4명이 등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4명 모두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¹³⁶⁾

연번	성명 (이명)	제적등본 (한자/본적)	6·25사변 피살자 명부 (한글/한자/본적/피살년월일)
1	장○봉	張○逢/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장○봉/張○逢/예천군 호명면 담암동/1950.9.30.
2	장○달	張○達/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장○달/張○達/예천군 호명면 담암동/1950.9.30.
3	장○걸	張○杰/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장○걸/張○杰/예천군 호명면 담암동/1950.9.30.
4	장○대	張○大/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장○대/張○大/예천군 호명면 담암동/1950.9.30.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삿날,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걸, 장○대의 희생 시기는 1950년 9월 1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장○현, 장○배가 장○봉 등 4명의 희생 경위와 시신 수습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신청인 이○옥, 조○순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이 4명의 가족과 함께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한 점, (3) 4명과 함께 연행되

131) “동거인 1963년 12월 31일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거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2) “동거자 박○○(배우자) 계출 동월 20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33) “동거인 1963년 12월 31일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거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4) “동거자 김○○(배우자) 계출 동월 21일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35) ‘1950년 경인(庚寅) 7월 19일 졸’, 『인동장씨황상파세보 4』(1996).

136)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장○봉이 장○봉(張○逢)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월간조선사에서 발간한 『피살자 5만9994명』에는 이를 오독하여 장○봉을 장○봉(張○逢)으로 기재하였다. 이 때문에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장○봉이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 1952; 월간조선사, 『피살자 5만9994명』, 2003. 또한 월간조선사의 『피살자 5만9994명』에는 호명(虎鳴)을 서양(庶陽) 등으로 오독하여 이들의 주소가 ‘서양면 담암동’로 기재되어 있다.

있던 이○○가 「피해자현황조사」(2007)에서 증언한 점, (4) 『6·25사변 피살자 명부』 상의 명단과 진실규명대상자 4명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장○봉, 장○달, 장○결, 장○대는 1950년 9월 1일 청년단장, 마을 동장, 면서기 등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들에게 연행되어 월포동 오백이재에서 희생되었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장○봉, 장○달, 장○결, 장○대와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3. 사건 조사 결과

가. 희생자의 수와 신원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 족보, 1기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시신 수습 여부, 제삿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자의 신원과 확인 근거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는 희생 사실 확인의 근거가 된 기록 및 진술 등을 표기하였다.

<표 4>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연번	사건 번호 (2마-)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비고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진술		시신 수습	제사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	직업	제적 등본 (사망일자, 사망장소)	족보 (사망일자, 발행 연도)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순국 반공 청년 운동자 명부	기타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포항시 (6명)															
1	1273	김○조 (金○祚, 남, 1908)	곡강면 칠포동	기타	1948. 4.18. 본적지			○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내각수반 표창장 (1963) 반공순국 청년동지 위령비 (1963)			○	음력 3.22.		희생 확인
2	13680	최○택 (崔○宅, 남, 1907)	흥해면 망천동	의사	1950. 8.21. 흥해면 곡강동 산곡		○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1952, 1954)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흥해읍 위령탑		양○○ (1941, 주민)	○	음력 7.7.		희생 확인

연번	사건 번호 (2마-)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비고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진술		시신 수습	제사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	직업	제적 등본 (사망일자, 사망장소)	족보 (사망일자, 발행 연도)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순국 반공 청년 운동자 명부	기타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3	6357	최○울 (崔○律, 남, 1940)	송라면 지경리	학생	1950. 2.4. 본적지				경북경찰 발전사 (2001)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조선일보 (1950) 남조선민보 (1950)	최○○ (1944, 가족, 희생 목격)	김○○ (1947, 주민)	○			희생 확인
4	6358	최○달 (崔○達, 남, 1943)	송라면 지경리	학생	1950. 2.4. 본적지				경북경찰 발전사 (2001)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조선일보 (1950) 남조선민보 (1950)	최○○ (1944, 가족, 희생 목격)	김○○ (1947, 주민)	○			희생 확인
5	6359	임○이 (林○伊, 여, 1907)	송라면 지경리	주부	-				경북경찰 발전사 (2001) 내고장의 대공투쟁사 (1964) 조선일보 (1950) 남조선민보 (1950)	최○○ (1944, 가족, 상해 목격) 김○○ (1947, 주민, 상해 목격)		-		상해	희생 확인
6	12092	윤○울 (尹○律, 남, 1926)	송라면 하송리	농업	1950. 9.16. 본적지	1950. 8.16. (2011)					윤○○ (1932, 조카) 장○○ (1944, 주민)	○	음력 8.14.		희생 확인
고령군 (8명)															
7	14642	정○현 (鄭○鉉, 남, 1878)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8.21. 우곡면 사전동 49	1950. 7.8.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손녀, 연행 목격)	추○○, (1948, 손자 며느리)	○	음력 7.7.		희생 확인
8	14643	한○이 (韓○伊, 여, 1891)	우곡면 사전동	주부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1950. 6.24.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손녀, 연행 목격)	추○○ (1948, 손자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연번	사건 번호 (2마-)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비고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진술		시신 수습	제사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	직업	제적 등본 (사망일자, 사망장소)	족보 (사망일자, 발행 연도)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순국 반공 청년 운동자 명부	기타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9	15789	정○문 (鄭○汶, 남, 1914)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3.15. 우곡면 대곡리 183 (산기슭)	1950. 2.21. (2005)			고령경찰서 전사확인서 (1967)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딸, 연행 및 시신 목격)	정○ (1951, 조카) 정○상 (1951, 조카) 정○상 (1951, 조카) 추○○ (1948, 며느리) 1기 오○○ (1932, 주민)	○	음력 2.19.		희생 확인
10	5656 14645	정○곤 (鄭○坤, 남, 1918)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1950. 6.24.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11	15369	정○영 (鄭○永, 남, 1924)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1950. 6.24.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12	7148 14647	정○규 (鄭○圭, 남, 1927)	우곡면 사전동	농업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1950. 6.24. (2005)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13	7149 14648	정○수 (鄭○守, 남, 1934)	우곡면 사전동	학생	1950. 8.7. 우곡면 사전동 56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6.23.		희생 확인
14	14649	정○길 (鄭○吉, 남, 1942)	우곡면 사전동	학생	1950. 8.21. 우곡면 사전동 49		○		부산일보 (1951) 매일신문 (1961)	정○○ (1946, 조카)	추○○ (1948, 조카 며느리)	○	음력 7.7.		희생 확인
예천군 (4명)															
15	12437	장○봉 (張○逢, 남, 1912)	호명면 담암동	농업 (마을 동장)	1950. 7.20. 본적지		○		피해자 현황조사 (2007)	1기 이○○ (1921, 이웃, 희생 목격)		○	음력 7.18.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 규명 결정 확인

연번	사건 번호 (2마-)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비고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진술		시신 수습	제사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	직업	제적 등본 (사망일자, 사망장소)	족보 (사망일자, 발행 연도)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순국 반공 청년 운동자 명부	기타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16	12438	장○달 (張○達, 남, 1918)	호명면 담암동	농업	1954. 12.17. 본적지		○		피해자 현황조사 (2007)	1기 이○○ (1921, 이웃, 희생 목격)		○	음력 7.18.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 규명 결정 확인
17	12439	장○걸 (張○杰, 남, 1918)	호명면 담암동	농업	1950. 7.17. 본적지		○		피해자 현황조사 (2007)	1기 이○○ (1921, 이웃, 희생 목격)		○	음력 7.18.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 규명 결정 확인
18	12440	장○대 (張○大, 남, 1921)	호명면 담암동	공무원 (면서기)	1950. 9.20. 본적지	1950. 7.19. (1996)	○		피해자 현황조사 (2007)	1기 이○○ (1921, 이웃, 희생 목격)		○	음력 7.18.	1기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 규명 결정 확인

나. 희생자의 특징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희생자의 나이는 10대(4명, 22%), 20대(4명, 22%), 30대(5명, 28%), 40대 이상(5명, 28%) 등 전 연령대에 분포하여 있었고, 성별은 대부분 남성(16명, 89%)이었으나 여성(2명, 11%)도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자는 대다수가 농업(9명, 50%)에 종사하였으나 연령의 특징에 따라 학생(4명, 22%)도 있었다.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18명의 거주지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5〉 희생자 거주지별 분포

거주지	포항시(구 영일군)			고령군	예천군	비고
	송라면	곡강면	흥해면	우곡면	호명면	
희생자 수(명)	4	1	1	8	4	18
비율(%)	22	6	6	44	22	100

〈표 6〉 희생자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합계
희생자 수(명)	16	2	18
비율(%)	89	11	100

〈표 7〉 희생자 연령별 분포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합계
희생자 수(명)	4	4	5	3	2	18
비율(%)	22	22	28	17	11	100

〈표 8〉 희생자 직업별 분포

직업	농업	공무원	기타	학생	합계
희생자 수(명)	9	1	4	4	18
비율(%)	50	6	22	22	100

다.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경북 포항·고령·예천 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21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이다.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1948년 4월에 발생한 1건(진실규명대상자 김○조)은 지방 좌익에 의한 피습으로 사망, 1950년 9월에 발생한 3건(진실규명대상자 최○율, 최○달, 임○이)은 무장 빨치산에 의한 피습으로 사망 혹은 상해¹³⁷⁾,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건 2건(진실규명대상자 최○택, 윤○율)은 인민군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사망하는 등의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령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1949년 3월에 발생한 1건(진실규명대상자 정○문)은 지방 좌익에 의해, 1950년 8월에 발생한 10건(진실규명대상자 정○현 등 7명)은 지방 좌익과 인민군에 의해 우익청년단 활동을 한다거나 좌익에 비협조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가족 8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예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1950년 8월에 발생한 4건(진실규명대상자 장○봉 등 4명)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당시 활동하던 지방 좌익이 같은 마을 주민이고 실명을 거론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 포항·고령·예천 지역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 사건이 발생한 주요 이유로는 대한청년단, 공무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당시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등을 꼽을 수 있다.

137) 1950년 9월에 발생한 '송라면 지경리 습격 사건'은 빨치산에 의한 기습 보복으로 마을 주민 다수가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Ⅲ. 결론 및 권고 사항

1.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북도 경북 포항·고령·예천지역에서 김○조(金○祚, 2마-1273) 등 민간인 18명이 한국전쟁 전후인 1948년 4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청년단원 및 그 가족, 공무원, 우익인사,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18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 사실이 확인된 13명은 다음과 같다. 김○조(金○祚, 2마-1273), 최○택(崔○宅, 2마-13680), 최○율(崔○律, 2마-6357), 최○달(崔○達, 2마-6358), 윤○율(尹○律, 2마-12092), 정○현(鄭○鉉, 2마-14642), 한○이(韓○伊, 2마-14643), 정○문(鄭○汶, 2마-15789), 정○곤(鄭○坤, 2마-5656, -14645), 정○영(鄭○永, 2마-15369), 정○규(鄭○圭, 2마-7148, -14647), 정○수(鄭○守, 2마-7149, 14648), 정○길(鄭○吉, 2마-14649)이다.

상해 사실이 확인된 1명은 임○이(林○伊, 2마-6359)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결정(희생 확인)된 장○봉(張○逢, 2마-12437), 장○달(張○達, 2마-12438), 장○걸(張○杰, 2마-12439), 장○대(張○大, 2마-12440) 등 4명은 진실규명결정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별 특징은 남성(89%)이, 직업별로는 농업(50%)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50%)가 많았고, 10대(22%)도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한청년단원, 공무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2. 권고 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 한국 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도 차별 없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나. 북한정권의 사과 촉구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쟁의 참상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붙임

〈붙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포항(4명, 6건)						
1	1273	한○자 (1948)	김○조 (金○祚 1908, 시아버지)	2022.12.15. 포항시 북구 삼호로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친척 등)	●김○조는 1남 5녀 중 외동 아들로, 영일군 곡강면 칠포동2동(잠불)에 거주하였음. 김○조는 학식이 있고 똑똑하며 인품이 좋고 언변도 훌륭했다고 함. ●김○조는 반공단체 같은 곳에서 활동하였음. ●김○조는 어느 해 음력 3월 23일경 칠포 초소에서 순경들과 반공활동 및 국회의원 선거대비 업무를 논의하고 새벽 2시~4시경 귀가를 하던 중 수십명의 좌익 세력에 의해 칼에 찔렸음. 김○조는 피를 흘리면서 개천 주변에 살던 사람의 집으로 갔음. 당시 개천 주변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김○조의 배우자가 김○조의 시신을 수습하였음. ●가해자는 지방좌익으로, 김○조의 집안 사람이었다고 함. ●김○조는 생전에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방 좌익들에게서 협박과 위협을 받았음. ●포항시에서 세운 충혼탑에 김○조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신청인 한○자는 오촌 당숙 및 당숙모와 마을 주민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2	13680	최○일 (1948)	최○택 (崔○宅, 1907, 아버지)	2023.7.19. 용인시 처인구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최○택은 6형제 중 둘째임. 최○택은 일본에서 공부하며 구 주위대를 나와서, 일본 오사카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차대전 전이 끝날 무렵 한국으로 귀국 후 흥해읍(망천동)에서 의사일을 함. ●당시 병원 2층에 우익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이 있었음. ●최○택은 한국전쟁 당시 안강전투에서 부상당한 국군을 치료하는 임시 군의관으로 일하였음. ●당시 학교 운동장에 야전병원이 운영되었고, 부상병들을 치료할 외과수술 경력을 가진 의사가 없어서 최○택이 임시 국가 공의로 위촉되어 부상병들을 치료했음. ●국군이 인민군에게 밀리고 전선이 후퇴하게 되자, 최○택은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을 가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 장기면에 사는 최○택의 형제 집으로 배를 타고 가기 위해 식구들과 봉림해변 갔으나, 풍랑이 높게 일어 사나흘간 배를 띄우지 못하게 됨. ●봉림해변에서 배가 뜰때를 기다리던 중 석 씨라는 지역민이 인민군과 함께 최○택을 찾아와서, 최○택을 불러내어 봉림해변가에 인접한 산으로 데려갔음. 그 곳(산)에는 흥해읍 일대에서 끌려온 사람들 여럿이 집결해 있었음. ●최○택은 인민군 부상자를 치료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끌려온)다른 사람들과 함께 희생되었음. ●당시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최○택 등 12명이 희생되었음. 가족들은 며칠 후 최○택의 시신을 수습하였음. 여름이라 시신의 훼손이 심해서 최○택의 옷을 보고 시신을 구분함. ●흥해읍사무소에 희생된 12명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음. 최○택과 함께 희생된 나머지 11명은 흥해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임. ●제사는 1950년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0일)에 지내고 있음. ●신청인 최○일의 어머니 오○○은 당시 최○택과 함께 잡혀 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최○택의 희생 상황을 전해 들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적 전문	주요 진술
3	6357 6358 6359	최○복 (1948)	최○율 (崔○律, 1940, 형) 최○달 (崔○達 1943, 형) 임○이 (林○伊 1907, 어머니)	2023.2.7. 진실화해 위원회 조사실 · 진술조서 2024.11.25. · 통화보고서	전문 (어머니)	- 진실규명대상자 최○율, 최○달, 임○이는 경북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에 거주함. 1950년 2월 3일(음력 12월 17일) 밤, 좌익 4~50명이 마을 전체를 몰살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죽창으로 사람들을 죽였음. - 최○율, 최○달의 아버지 최○○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간 장녀의 집에 가 있었고, 당시 최○○의 집에는 최○○의 배우자 임○이, 아들 최○율과 최○달, 최○복, 딸 최○○만 있었음. - 인민군이 죽창으로 임○이를 찌르려고 하자 최○율과 최○달이 달려들어 막다가 (죽창에 찔려) 현장에서 즉사하였음. 임○이는 인민군의 죽창에 찔려서 창자가 튀어나와 있었음. -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최○○이 집에 와서 임○이를 포항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3년 정도 치료를 받았음. - 임○이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후유증으로 40여년을 거동이 불편하여 고생을 하다 사망함. - 최○율, 최○달의 시신은 뒷산에 매장함. - 송라면 지경리에서 30~40가구 정도가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고 알고 있음.
4	12092	윤○수 (1950)	윤○율 (尹○律 1926, 아버지) 이명: 윤○경, 송○○율	2023.12.6.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 윤○율은 송라면 하송리에 거주하였음. 당시 송라에는 좌익들이 많았고, 좌익들이 윤○율을 불러내 끌고가서 구타하고 재물을 내놓으라는 이유로 괴롭히곤 하였음. - 윤○율은 송라지역의 대동청년단장이었고, 부단장 이○○는 좌익에게 끌려가 나무에 묶여서 총살 당했다고 함. - 윤○율은 집안에 땅이 많아 그것을 관리하며 산에서 내려 온 좌익들과 싸우고, 경찰서 등 관공서를 지키기도 했다고 함. 1950년 음력 8월 12일경, 윤○율이 '북한 김일성을 죽이려 간다'며 장총을 들고 가족들이 피난살이를 하던 논 옆쪽길(영덕방면)로 갔음. - 이후 윤○율의 어머니 김○○가 영덕(혹은 울진)쪽에서 윤○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꾼 두 명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윤○율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보고 시신을 수습하였음. - 윤○율의 제사는 음력 8월 14일에 지내고 있음. - 신청인 윤○수는 할머니 김○○ 등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고령(4명, 10건)						
5	14642 14643 14645 14647 14648 14649	정○상 (1951)	정○현 (鄭○鉉, 1878, 할아버지) 한○이 (韓○伊, 1891, 할머니) 정○곤 (鄭○坤, 1918, 삼촌) 정○규 (鄭○圭, 1927, 아버지)	2023.2.8. 대구시청 산격청사 · 진술조서	전문 (친척)	- 정○현, 한○이, 정○곤, 정○규, 정○수, 정○길은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사부골)에서 함께 거주함. - 한국전쟁 전에 6형제의 장남 정○문이 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누군가 남로당 가입을 권유했고 정○문은 이를 거부해서 살해당함. - 다른 형제들 또한 정○문과 함께 청년단 활동을 했다고 들었음. - 정○문 사망 이후 한국전쟁 발발하자 고령의 좌익들 사이에 정씨 집안은 인민군이 죽여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는 소문이 퍼짐. -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했을 당시 남은 가족들은 피난을 가지 못하였음. - 인민군 협력자 박○○과 인민군이 1950년 8월 6일(음력 6월 23일)에 한○이, 정○곤, 정○영, 정○규, 정○수를 산으로 끌고가 살해함.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에는 정○현, 정○길이 인민군에게 연행되어 살해됨. - 인민군이 후퇴한 뒤에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서 시신을 발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정○수 (鄭○守, 1934, 삼촌) 정○길 (鄭○吉, 1942, 삼촌)			견하였고, 경찰 입회하에 시신을 수습함.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뒤에 수습하여 시신이 많이 부패하였다고 함. ●박○○이라는 지방 좌익이 인민군에 협조하여 활동함. 박○○은 무기징역형으로 15년 정도 복역 중에 질병으로 풀려났다고 들었음. ●신청인 정○상은 집안 친척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6	15789	정○규 (1980)	정○문 (鄭○汶, 1914, 할아버지)	2023.2.9. 대구시청 산격청사 · 진술조서 (참고인 추○○ 동석)	전문 (어른)	●진실규명대상자 정○문(추○○의 시아버지)은 우곡면에서 대 한청년단장으로 활동함. ●좌익들이 정○문을 포섭하고 싶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1949년 3월 15일에 좌익세력 3명이 정○문을 유인하여 어 디론가 데리고 간 후 살해함. ●다음날 정○문과 함께 출근을 하려던 청년단원이 정○문을 찾다가 마을 구석에 방치된 시신을 발견하였음. 정○문의 형 제들이 시신을 수습함.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은 정○문의 어머니 한○이, 형제들 을 모두 살해한 후 정○문의 아버지 정○현과 당시 8살이던 막내 동생을 살해하였음. ●인민군이 후퇴한 다음에 경찰이 정○문의 가족들 시신을 수 습하였음. 참고인 추○○는 세월이 지난 뒤 정○현, 한○이의 시신을 이장하다가 두개골에 총알 크기의 구멍이 있는 걸 목 격함.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한 후 박씨 집안이 마을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인민군들에게 주었으며, 인민군들에게 마을 우익들 을 밀고함.
7	15369	정○상 (1951)	정○영 (鄭○永, 1924, 아버지) *이명: 정○두	2023.2.27. 예천시 용문경천로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어른)	●정○영은 농사를 지었지만 주로 우곡면 청년단원으로 활동 함. 정○영의 형 정○문이 우곡면 청년단장이었음. ●1948년 음력 2월 20일 지방 좌익이 평소 공산당 가입을 거 부하던 정○문을 살해함. ●이 일은 당시 마을에 살던 박○○과 연관이 있었음. 정○영과 형제들은 정○문의 상여를 매고 박○○의 집에 들어가는 등 마을의 지방 좌익들을 드잡이해서 기를 죽여놨음. 이로 인해 박○○ 등은 정○영의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게 됨.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나 정○영의 가족들은 피란을 가지 않고 마을에 머물렀음.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하자 박○○은 인민 군에게 정○영의 집안을 고발하면서 그 가족들이 숨은 장소 를 밀고하였음. 또한 정○영의 가족들의 양식을 인민군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음. ●1950년 8월 7일, 정○영과 그 형제들, 정○영의 어머니 한 ○이는 인민군에 의해 희생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자 정○영의 막냇동생 정○길은 박○○ 의 처가 마을 우물가에 나온 것을 보고 욕을 함. ●이것을 보고 후환이 두려웠던 좌익세력과 인민군은 정○길과 정○길의 아버지 정○현을 1950년 입식일에 살해하였음.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방치되 어 있다가 고령 수복 후 면에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 수습됨. 경찰이 가족들의 비석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나 후환을 두 려워한 정○문의 배우자가 이를 거절함. ●한○이의 시신을 이장할 때 친척 정○상이 한○이의 유골 머 리 부분에서 총 맞은 자리를 확인했다고 함.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8	5656 7148 7149	정○ (1951)	정○곤 (鄭○坤, 1918, 아버지) 정○규 (鄭○圭, 1927, 삼촌) 정○수 (鄭○守, 1934, 삼촌)	2022.12.9. 대구시 달서구 비슬로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형)	- 정○곤, 정○규는 농업에 종사했으며 정○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세 사람은 형제로, 당시 세 형제의 큰 형 정○문은 대한청년단 단장이었고 정○곤, 정○규는 단원이었음. - 사건 발생 전 지방 좌익이 대한청년단 100호 단장이던 정○문에게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권유했으나 정○문이 거절하자 지방 좌익들에게 희생됨. - 이후 인민군이 고령을 점령했을 당시 마을의 좌익인사인 박○○은 정○문의 남은 가족들을 인민군에게 고발하였고, 정○곤이 숨은 곳 또한 인민군에게 알려주었음. - 박○○은 정○문에 의해 자신의 형이 구속되자 이에 원한을 품고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함. - 이로 인해 신청인의 가족들은 마을 대밭에서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고 1950년 8월 7일 정○곤, 정○영, 정○규, 정○수와 형제들의 어머니 한○이가 인민군에 의해 사전동 뒷산에서 희생됨. - 이후 인민군은 형제들의 아버지 정○현과 막내 정○길을 살해함. 당시는 1950년 입식일이었음. - 희생자들의 시신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수습되었고 살아 남은 가족들은 친척집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음.

예천(4명, 4건)

9	12437	장○현 (1938)	장○봉 (張○逢 1912, 아버지)	2023.8.18.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마을회관 - 진술조서	목격 (시신 수습)	- 장○봉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었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 구장을 하였음.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예천을 장악하자 마을 좌익이던 장○○, 장○○, 장○○, 장○○, 장○○ 등 다섯 사람의 세력이 강해짐. 이들은 인민군을 따라 월북했지만 장○○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마을에서 살다가 사망함. - 장○○ 등은 원래 사상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인민군이 들어와 자신들이 힘을 얻으니 마을에서 잘 살던 사람들을 죽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음. - 인민군의 예천 장악 후 예천경찰서 순경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담암동로 피난을 왔음. 장○○ 등 지방 좌익들은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장○봉은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했다고 함. 이로 인해 장○○ 등 지방 좌익들이 장○봉에 대해 '사상이 다르다.'라고 판단함. 그후 지방 좌익들은 예천경찰서 순경의 어머니와 며느리를 죽이고 갓난 아기를 산채로 묻음. -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 지방 좌익들은 장○봉과 장○봉의 동생 장○달, 당시 청년단장 이○○, 면서기 장○대, 마을에서 잘 살던 장○걸, 부녀회장 이○○를 불러내 호명지서로 끌려가 3일간 지서에 구금됨. 1950년 음력 7월 18일, 지방좌익들은 이들을 예천으로 데려간다고 하며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오백이재에서 총살함. 끌려간 사람 중 이○○는 그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살려줌. 이○○가 마을로 와서 다섯 사람이 희생된 사실을 알려 줌. - 마을 사람 중 장○○이라는 사람이 좌익을 좀 알았는데 국군 수복 후 경찰이 장○○에게 예천 좌익들을 지목하게 해 지목된 사람들과 장○○을 모두 희생시켰다고 함.
---	-------	---------------	------------------------------	--	------------------	---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10	12438	이○옥 (1944)	장○달 (張○達, 1918, 시아버지)	2023.8.18.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마을회관 - 진술조서	전문 (마을 사람)	•장○달은 과거 일본에 거주한 적이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함. •마을에서 장○달 등 5명이 함께 끌려가 누군가에게 총살을 당했다고 함. 장○달과 함께 희생된 사람은 장○걸, 장○봉, 장○대, 이○○임. •장○달이 희생된 것도 장○달과 함께 희생된 장○걸의 배우자에게 들었다고 함. •장○달의 제사를 음력 7월 18일에 지내고 있음.
11	12439	조○순 (1952)	장○걸 (張○杰, 1918, 시아버지)	2023.8.18.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마을회관 - 진술조서	전문 (시모)	•장○걸은 농사를 지으며 소장사를 하였음. 어느 해 음력 7월 18일, 누군가 장○걸 등 마을 사는 사람 5명을 끌고 가 새끼를 꼬아 묶은 다음 오백이재에서 총살함. •신청인 조○순은 정확한 사건 발생 시기는 알지 못하나 시집을 오니 다섯 집이 음력 7월 18일에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함. •당시 희생된 사람은 장○걸과 장○대, 장○봉, 장○달, 이○○임.
12	12440	장○배 (1945)	장○대 (張○大, 1921, 아버지)	2023.8.18. 예천군 호명면 담암동 마을회관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장○대는 호명면사무소 호적계 공무원이었음. 음력 1950년 7월 18일 아침, 출근 전 식사 중인 장○대에게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지방좌익이 찾아와 퇴근 후 7시까지 집회장(동회관)으로 오라고 전함. 퇴근 후 장○대가 동회관으로 가니 사전에 지방좌익들이 호출한 사람들이 와 있었음. •당시 지방좌익들은 장○대를 포함해 여섯 명을 호출했고 모두 동회관에 도착하자 그들을 새끼줄로 묶어서 호송함. 당시 호송에 참여한 지방좌익은 모두 세 명으로 어깨에 총을 메고 호송되는 사람들 앞뒤로 한 명씩, 옆에 한 명이 섰음. •장○대 등 여섯 명은 호명면사무소로 끌려감. 그날 저녁 11시 30분경, 장○대 등은 다시 지방좌익들에 의해 호명지서로 옮겨짐. •다음 날(음력 7월 19일) 새벽 4시 반경 호명지서를 출발해 호명지서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호명면 월포동 오백이재 계곡으로 끌려감. 오백이재 계곡에서 지방좌익들은 장○대 등 여섯 명의 머리에 수건을 씌움. •좌익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장○대는 “나는 억울하게 죽지만 나의 부모님과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유언을 남김. •함께 끌려간 다섯명은 지방좌익들의 손에 총살되었으나 이○○는 좌익들이 총을 쏘지 않고 밀쳐 넘어뜨린 뒤 엉덩이를 걷어 차며 “빨리 도망가라.”라고 해 살아났음. 소장사를 해 돈이 많았던 이○○의 아버지가 사전에 좌익에게 돈을 써서 이○○의 목숨을 살렸다고 함. •당시 장○대와 함께 희생된 사람은 장○걸, 장○달, 장○봉, 이○○이며 모두 음력 7월 18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당시 끌려간 사람들은 면사무소 직원(장○대), 동장, 마을 유지, 여성 단체 회원 등으로 마을에서 발언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 •신청인 장○배는 할머니 김○○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붙임(표) 2〉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포항(5명)							
1	13680	최○택 (崔○宅)	양○○ (남, 1941)	주민 · 영일군 흥해면 망천동	2024.8.22.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동 경로당 · 진술조서	전문 (친구)	- 한국전쟁 발발 전, 흥해지서에는 대한청년단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음.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마을에 내려오자 인민군은 마을 좌익들을 동원하여 청년단원을 찾아 연행하였음. - 최○택을 포함한 청년단원들은 곡강동 하천변(현, 곡강천 정수장 위치)에서 사람들을 총살하였음. - 흥해읍사무소에 이들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으며 내년 4월 흥해 청년단체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음. - 참고인 양○○는 최○○의 이웃이었고, 최○○의 조카 최○○과 동창이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최○○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 참고인 양○○는 호적상 1941년생, 실제 1939년생임.
2	6357 6358 6359	최○율 (崔○律) 최○달 (崔○達) 임○이 (林○伊)	최○○ (여, 1944)	가족 ·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2024.8.22. 포항시 남구 송도동 행정복지 센터 · 진술조서	목격 (희생, 시신) 전문 (아버지)	1950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 밤, 참고인 최○○는 어머니 임○이, 셋째 언니 최○○와 오빠 최○율·최○달, 동생 최○복과 함께 자택에 있었음. 그때 좌익들이 마을 뒷산에서 나팔을 불고 내려와 마을을 습격하였음. - 좌익들은 참고인 최○○의 집에도 왔음. 임○이는 최○○와 최○복을 방 구석 이불 사이에 숨겼는데, 숨지 못한 언니 최○○와 오빠 최○율·최○달은 인민군에게 죽창에 찔려 사망하였음. 어머니 임○이는 좌익에 의해 창자가 튀어나오는 상해를 입었음. 그후 좌익들은 다시 나팔을 불고 산으로 도망감. - 참고인 최○○는 집 앞에서 언니, 오빠들의 시신이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눕혀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 - 임○이는 이마, 양 손, 배, 가슴 등 여러 곳에 죽창을 맞았으며 창자가 튀어나온 것이 가장 심각하여 포항도립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음. 참고인 최○○는 어머니 임○이가 첫 수술 후 창자가 자꾸 새서 두 번 정도 수술을 더 하셨다고 아버지 최○○에게서 전해 들음. 그후 임○이는 거동을 잘 하지 못하다가 사망하였음. - 포항시 국회의원을 지낸 박○○의 집이 진술인의 집 바로 옆이었는데, 그 집 아이들 5명은 장롱에 숨어있다가 좌익들이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한꺼번에 죽었다고 들었음. - 사건 당일 날이 너무 추워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불타는 집에서 불을 끄던 기억이 남.
3	6357 6358 6359	최○율 (崔○律) 최○달 (崔○達) 임○이 (林○伊)	김○○ (남, 1947)	주민 ·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2024.8.22. 포항시 남구 송도동 행정복지 센터 · 진술조서	전문 (가족, 마을 주민)	- 사건 발생 이전, 좌익들이 송라면 지경리 마을의 배를 탈취한 뒤 무기를 실어 와 마을 앞 ‘고래불’에 숨겨두었음. 좌익들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송라면 지경리 청년단이 이를 목격하고 남정지서에 신고하였음. 1950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 당시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동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을에 있던 좌익 내통자가 그 사실을 좌익들에게 알렸음. 좌익들은 무기 운반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송라면 지경리를 습격하였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좌익들이 마을에 불을 붙이고 다녔고, 바람이 부니 불이 옮겨붙어 마을 전체가 불탔음. •당시 지경리 마을은 60~70호 정도 되었는데, 좌익들이 불을 붙이고 다녔고, 한겨울에 바람이 부니까 불이 옮겨 붙어서 마을 전체가 불탔음. •당시 참고인 김○○의 아버지 김○○(지경리 청년단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 •임○이의 집은 큰길 가에 있었는데, 좌익들은 임○이의 집에도 들어갔음. 좌익들이 임○이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자 임○이의 셋째 딸 최○○와 두 아들 최○울·최○복이 이를 막다가 사망하였음. 또한 임○이는 창에 찔려 창자가 튀어나와 사망하였음. •그날 어린 동생 최○○와 최○복은 이불 속에 숨어 있었는데, 좌익들이 그 곳을 발로 밟아 최○○는 골반을 다침. •임○이는 창자가 튀어 나왔는데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 조금만 무리를 하면 배가 붓곤 하여 집 밖에 나갈 수 없고 집에서 지냈음. •신청인 김○○는 사건 발생일 마을에 불이 나서 바닷가로 이불을 가져다 빼던 기억이 있으며, 그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임○이의 상해를 목격함. 최○○와 결혼한 후 최○울·최○달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들음. •참고인 김○○는 호적상 1947년생, 실제 1945년생임.
4	12092	윤○울 (尹○律)	장○○ (남, 1944)	주민 ·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2024.8.22.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1리 경로당 · 진술조서	전문 (마을 주민)	•윤○울은 송라면 청년 단장으로 마을 뒷산에 좌익들이 생기자 마을 경비를 서곤 함.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포항까지 내려오자 윤○울은 마을 주민 김○○, 이○○와 함께 피난을 갔음. 피난을 윤○울, 김○○, 이○○에게 인민군이 총을 쏘았음. 김○○과 이○○는 살아 남았지만 윤○울은 다리에 총을 맞고 앓은 채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김○○, 이○○가 살아 돌아 와 윤○울의 가족들에게 윤○울이 희생된 장소를 알려주었음.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윤○울의 시신을 화장하여 수습해왔음. •1950년 9월 한국전쟁 발발 후, 참고인 장○○는 월포동로 피난을 갔다가 추석 이후 돌아왔음. 참고인 장○○는 윤○울의 희생을 목격한 김○○, 이○○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윤○울을 희생시킨 것은 인민군이며, 윤○울이 희생된 시기는 안강전투가 난 후이며 서울이 수복되고 인민군들이 쫓겨 올라가기 전임.
5	12092	윤○울 (尹○律)	윤○○ (여, 1932)	조카 ·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2024.8.22.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1리 경로당 · 진술조서	전문 (마을 주민)	•한국전쟁 발발 후 윤○울은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전해 들음. •마을 사람들이 윤○울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윤○울이 희생된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 후이며 추석(1950년 9월 26일)보다는 전으로 알고 있음. •참고인 윤○○는 사건 발생 당시 피난을 갔으며 피난에서 돌아와 마을 주민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고령(1명)							
6	14642	정○현 (鄭○鉉)	정○○ (여, 1946)	가족 (친척) · 고령군 우곡면 사전동	2024.8.29. 대구 광역시 동대구역 인근 카페 · 진술조서	목격 (시신 수습) 전문 (어머니)	《정○문의 희생》 ●1949년 3월 14일 밤, 모르는 사람들이 정○문을 찾아와 “면에 급한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며 정○문을 데리고 갔음. 다음 날 아침, 정○문의 동생 정○영이 출근을 하기 위해 정○문의 집에 왔음. ●정○문의 배우자 정○○에게 사정을 들은 정○영은 정○문을 찾아 나섰고, 집 근처(대곡리 183)에 정○문이 쓰러져 있는 것을 알렸음. 그후 가족들이 정○문의 시신을 수습해와 가족장을 치렀음. 참고인 정○○는 시신을 수습해온 것을 목격하였음.
	14643	한○이 (韓○伊)					《정○현 등 7명 희생》 ●한국전쟁 발발 후, 정○문의 남은 가족들은 마을 뒷산으로 피난을 갔음. 인민군이 고령에 들어오자 마을 좌익 박○○이 인민군에게 밀고를 하여 정○문의 가족들이 숨어 있는 피난처에 왔음. ●인민군은 정○문의 어머니 한○이, 정○문의 동생 정○곤, 정○영, 정○규, 정○수를 새끼줄로 묶어 연행하였음. 그후 인민군은 정○문의 배우자 정○○ 등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후 어딘가로 데려가 다섯 사람을 총살하였음.
	15789	정○문 (鄭○汶)					
	14645 5656	정○곤 (鄭○坤)					
	15369	정○영 (鄭○永)					
	14647 7148	정○규 (鄭○圭)					
	14648 7149	정○수 (鄭○守)					
	14649	정○길 (鄭○吉)					

〈붙임(표)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출생 연도)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15789	정○문 (鄭○汶)	오○○ (1932)	주민 ·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2008.4.2.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 참고인 오○○의 아버지 오○○은 한민당당원으로 돈이 많은 부르주아에 속했음. 오○○은 좌익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서울로 도피하였음. 그후 오○○은 사이가 안 좋은 순경에 의해 1950년 7월 말 경찰에게 연행되어 희생되었음. - 우곡면 대한청년단장 정○문은 좌익들에게 살해되었음. 정○문을 살해한 데 동조한 사람은 ‘박선생’이라고 불리던 교사 출신의 사람으로 알고 있음.
	12437 12438 12439 12440	장○봉 (張○逢) 장○달 (張○達) 장○걸 (張○杰) 장○대 (張○大)	이○○ (1921)	이웃 · 호명면 담암동	2009.3.9.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목격 (시신)	1950년 9월 1일, 마을 좌익 장○○, 장○○, 장○○ 등은 이○○(대한청년단장), 장○걸(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 왔다는 이유), 장○달(장○봉의 동생), 장○봉(구장), 장○대(면서기)등 5명을 마을회관으로 호출함. - 좌익들은 이들의 사상검증을 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포박을 한 채 면사무소(인민위원회 본부)로 5명을 연행하였고, 9시경 호명지서로 연행하였다가 얼마 후 오백이재에서 총과 칼로 난도질하여 살해함. - 이○○의 먼 친척 이○○이 이○○의 시신을 찾아 나섰다가 오백이재에서 다섯 명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알려주었음. 당시 이○○의 시어머니와 일가 친척, 다른 4명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오백이재에 갔음. - 이○○은 총알 2방이 머리와 옆구리를 관통하고, 다리와 엉덩이 등에 칼로 살점이 도려내진 채 죽어 있었음. 5명 모두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음력 7월 18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